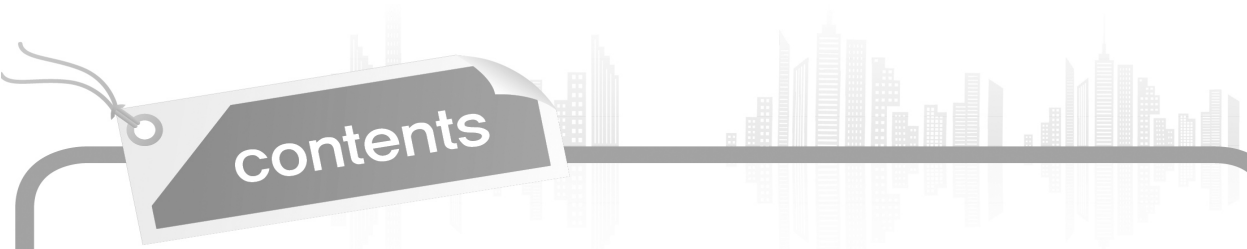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contents

I. 일 반 회 계

○ 건설정책과	03
○ 건축도시과	31
○ 교통정책과	53
○ 도로철도항공과	137
○ 토지관리과	231
○ 종합건설사업소	247
○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255
○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265

II. 특 별 회 계

○ 학교용지부담금	265
○ 광역교통시설	277

건설정책과



건설정책과

1. 충청남도 건설자재 및 건설업 채용 박람회 개최 .. 06
2. 충남혁신도시 지정 기념행사 08
3. 충청남도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 10
4.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 용역 12
5.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14
6. 계룡제일문 설치 16
7.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18
8.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20
9. 스마트시티 광역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 22
10.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지원 ... 24
11.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 ... 26
12. 스마트시티 사업지원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 28

충청남도 건설자재 및 건설업 채용 박람회 개최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건설정책 지원
	세부사업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생산·판매되는 건설자재를 사용자(공공발주기관, 건설사업자, 건축주 등)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건설자재 소비 촉진
- 지역대학에서 배출되는 건설분야 전문인력이 지역 우량 건설업체 및 신기술개발업체, 자재생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 사업 위치 : 도내(구체적 장소 미정)

○ 사업 기간 : '20년 하반기(단년도 사업) ※ 코로나19에 따라 시기 조정

○ 예 산 액 : 230,000천원

※ 증감 사유 : '충남 건설자재&인재채용 박람회 기본계획(안)'에 따른 박람회 개최 비용 증액

○ 사 업 량 : 박람회 개최 1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건설자재 및 건설업 채용 박람회 개최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7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도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민의 우선 고용,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청남도 건설자재 및 건설업 채용 박람회 개최 : 230,000천원 ○ 박람회장 설치 : 144,000천원 · 박람회장 임차 및 부스 설치 : 92,000천원 · 무대설치, 음향 장비 등 설치 : 32,000천원 ○ 행사 진행 : 20,200천원 · 아나운서, 행사도우미 등 7,200천원 · 행사 보험료, 평가결과 분석 등 : 13,000천원 ○ 홍보물 및 책자 제작 : 58,700천원 ○ 부대비용 : 7,1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30,000	-	-	230,000	23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부담금	230,000	-	-	230,000	230,000	-	도 금고 협력사업

* 보조율 : 부담금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2019년 (2020~2024)	-	-	-	-	-	-	2020.4월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건설기술팀	이남재 (행) 2810	김경래 (행) 4605	강현직 (행) 4624

충남혁신도시 지정 기념행사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건설정책 지원
	세부사업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충남 최대 역점과제인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220만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혁신도시 지정에 기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
- 사업 위치 : 충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0. 6월 ~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85,000천원
- 사 업 량 : 충남 혁신도시 지정 기념행사 1식
- 사업시행방법 : 위탁수행(KBS 열린음악회)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남도정의 최대역점과제인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기념하는 행사
- 지원근거 :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혁신도시 지정 기념행사 : 285,000천원(전액 부담금) ○ 혁신도시 지정 기념행사 위탁 (KBS 열린음악회) · 무대임대 및 설치, 무대공연, 행사홍보 등 1식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85,000	-	-	285,000	285,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부담금	285,000	-	-	285,000	285,000	-	도 금고 협력사업

* 보조율 : 부담금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2020.4월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스마트혁신도시팀	이남재 (행) 2810	윤종한 (행) 4604	서유덕 (행) 4629

충청남도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건설정책 지원
세부사업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
통 계 목	연구개발비 (207-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장제8호바목에 따라 2022년도(5년차) 목표(법정계획)로 지역개발계획(변경) “재정비”
- 사업 위치 : 성장촉진지역 6개 시·군(공주,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 공주 신규지정 거점지역 9개 시·군(천안,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홍성, 태안)
- 사업 기간 : 2020.08.01. ~ 2021.07.31.(단년도 사업)
- 총 사업비 : 320,000천원
- 예산액 : **50,000천원**
- ※ 증감 사유 : 「충청남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에 대하여 22년도(5년) 목표(법정계획)로 재정비 및 성장촉진지역 재조정 고시(‘19.9.10, 국토부·행안부)에 따른 신규사업(국비지원) 추가 발굴
- 과업 범위 : 6개 시·군 발전촉진형(신규발굴 포함), 9개 시·군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15개 시·군 9개 지역개발사업 실현가능성 검토, 신규사업 발굴 등 지역개발계획 재정비
- 지원근거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장제8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지역개발계획의 승인)

① 시·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역개발계획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장제8호(계획의 변경)

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개발계획의 타당성과 지역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청남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변경) 연구용역비 : 50,000천원(전액 도비) ○ 연구용역 1식 : 50,000천원 - 주요내용 : 성장촉진지역 6개 시·군(신규 발굴 포함), 거점지역 9개 시·군 지역개발계획(변경) “재정비”	5년차 “재정비” (법정계획)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21년)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20,000	-	-	50,000	50,000	270,000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320,000	-	-	50,000	50,000	270,000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지역발전팀	이남재 (행) 2810	여형구 (행) 4606	이은철 (행) 4627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 용역	정책사업	취약지 도시개발
	단위사업	건설정책 지원
	세부사업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
	통 계 목	연구개발비 (207-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낙후된 성장축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전액 국비)을 사전 발굴·컨설팅으로 국가 정책사업에 선제적 대응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성장축진지역(6개 시·군*)
 - * 공주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 사업 기간 : 2020. 7월 ~ 2021. 4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20,000천원**
 - ※ 증감 사유 :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 및 컨설팅을 위한 연구용역비 반영, 사업발굴 대상지 확정에 따라 시·군비 부담액 추후 반영
- 사 업 량 : 지역개발사업 발굴 2~3개소(시군 연계형, 일반형, 고령친화형)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성장축진지역 6개 시·군 공동
- 사업 내용 : 국토부 공모 선정을 위한 연계형 사업발굴 공동시행 및 성장축진지역(6개시·군) 지역개발사업(국비100%) 공모사업 발굴
 - ※ 매년 국토부에서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1건당 20억(연계형 최대60억) 공모 추진
- 지원근거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내부방침(사업대상지 발굴을 위한 용역추진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 용역 : 120,000천원(전액 도비) ○ 연구용역 1식 : 120,000천원 - 주요내용 : 지역개발사업 발굴 2~3개소(시군 연계형, 일반형, 고령친화형)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20,000	-	-	120,000	12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120,000	-	-	120,000	12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지역발전팀	이남재 (행) 2810	여형구 (행) 4606	강기석 (행) 4628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도시계획 관리
	세부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낙후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약 완화
- 사업 위치 : 공주시, 금산군 개발제한구역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 **3,485,000천원**
※ 증감 사유 : 국토교통부가 직접 편성해서 교부해주는 사업으로 국토부 예산증액 편성에 따른 증가
- 사 업 량 : 2개 시·군(공주시, 금산군)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주민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 정비 등 지원
- 지원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2.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 등을 위한 훼손지 복구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 3,872,500천원 (국비 3,485,000, 시·군비 387,500) ○ 공주시 : 3,542,500천원 (국비 3,188,000, 시비 354,500) – 사봉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L=300m, B=15.0m : 2,690,000천원 (국비 2,421,000, 시비 269,000) – 학봉리 통행로 개선공사 L=330m, B=3.0m : 63,300천원 (국비 57,000, 시비 6,300) – 학봉리 농로포장공사 L=600m, B=3.0m : 89,200천원 (국비 80,000, 시비 9,200) – 구시울 숲속마당 조성사업 (여가복지시설 1식) : 700,000천원 (국비 630,000, 시비 70,000) ○ 금산군 : 330,000천원 (국비 297,000, 군비 33,000) – 신대2리 농로포장 L=280m : 90,000천원(국비 81,000, 군비 9,000) – 신대3리 농로포장 및 세천정비 L=150m : 100,000천원(국비 90,000, 군비 10,000) – 지량2리 세천정비 L=150m : 140,000천원(국비 126,000, 군비 14,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872,500	-	3,783,300	3,872,500	89,200	-	
국 비	3,485,000	-	3,405,000	3,485,000	80,000	-	균특
도 비	-	-	-	-	-	-	
시군비	387,500	-	378,300	387,500	9,2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90%, 시군비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533,000	2,533,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이남재 (행) 2830	김용목 (행) 4603	윤창호 (행) 2813

계룡제일문 설치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도시계획 관리
	세부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개최 기원 및 국방수도의 상징물 설치
- 사업 위치 :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17번지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 450,000천원 (2020년 사업비 총액 : 90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도비 지원
- 사 업 량 : 전통형 문루 설치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계룡시장
- 사업 내용 : 전통형 문루 설치 1식(B=8m, L=35m, H=15m)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2항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계룡제일문 설치 : 900,000천원(도비 450,000, 시군비 450,000) ○ 공사비 1식 : 9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00,000	-	-	900,000	90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450,000	-	-	450,000	450,000	-	
시군비	450,000	-	-	450,000	45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2019년 특별교부세 450,000천원 지원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이남재 (행) 2830	김용목 (행) 4603	윤창호 (행) 2813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도시계획관리
	세부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 등 도시계획시설 개량, 정비 및 확충 지원
- 사 업 위 치 : 도내 도시계획시설
- 사 업 기 간 : 2020. 5. ~ 12월
- 예 산 액 : **5,582,500천원** (2020년 사업비 총액 : 11,910,000천원)
- 사 업 량 : 도시계획시설사업 44건 (기정 35건, 추경 9건)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2개 시장·군수
- 사 업 내 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정비, 개량 및 확충 사업 시행
- 지 원 근 거 :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시계획시설사업 : 11,910,000천원(도비 5,582,500, 시군비 6,327,500) ○ (기 정) 도시계획시설 지원사업 : 8,330,000천원(도비 3,792,500, 시·군비 4,537,500) · 도시계획시설 정비, 개량 및 확충 35개 사업 ○ (추 경) 도시계획시설 지원사업 : 3,580,000천원(도비 1,790,000, 시·군비 1,790,000) · 천안시 번영로 보행육교설치 : 총 600,000천원(도비 300,000, 시비 300,000) · 천안시 백석동 공원 보수정비사업 : 총 120,000천원(도비 60,000, 시비 60,000) · 천안시 두정1교 인도교 설치 : 총 620,000천원(도비 310,000, 시비 310,000) · 계룡시 왕대리 도로정비공사 : 총 240,000천원(도비 120,000, 시비 120,000) · 당진시 면천면 시내 인도 정비공사 : 총 100,000천원(도비 50,000, 군비 50,000) · 천안시 청수동 아스콘재포장 공사 지원 : 총 100,000천원(도비 50,000, 군비 50,000) · 아산시 공수4호 어린이공원 개선사업(물놀이터) : 총 400,000천원(도비 200,000, 시비 200,000) · 아산시 당정 제2산단3호 공원 개선사업(물놀이터) : 총 400,000천원(도비 200,000, 시비 200,000) · 금산군 금산천 교량 및 전통시장 연결도로 개설 : 총 1,000,000천원(도비 500,000, 군비 1,500,000)	
총사업비	11,910,000천원(도비 5,582,500, 시군비 6,327,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1,910,000	-	8,330,000	11,910,000	3,580,000	-	
국 비	-	-	-	-	-		
도 비	5,582,500	-	3,792,500	5,582,500	1,790,000	-	
시군비	6,327,500	-	4,537,500	6,327,500	1,79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47%, 시군비 53%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928,400	9,928,4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이남재 (행) 2810	김용목 (행) 4603	윤창호 (행) 2813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세부사업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군에게 공여된 구역 주변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내 2개시 일원(천안, 아산)
- 사업 기간 : 2018.1.1.~2022.12.31.(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비 : 15,000,000천원
- 예산액 : **900,000천원** (2020년 사업비 총액 : 1,80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비(국비 500,000천원) 추가지원
- 사업량 : 2개시 2개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아산시
- 사업 내용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기반시설 지원(인도설치 및 도로설치)
- 지원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4조 제1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 교통시설·전력 및 상수도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 1,800,000천원(국비 900,000, 시비 900,000) ○ 천안 병천천변 인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 1식 x 1,400,000천원 = 1,400,000천원 ○ 아산 도시계획도로(중로) 개설사업 : 1식 x 400,000천원 = 4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5,000,000	1,900,000	800,000	1,800,000	1,000,000	11,300,000	
국 비	4,300,000	700,000	400,000	900,000	500,000	2,700,000	
도 비	-	-	-	-	-	-	
시군비	10,700,000	1,200,000	400,000	900,000	500,000	8,600,000	
기 타	-	-	-	-	-		

* 보조율 : 국비 정액지원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0	-	500,000	0%	500,000	실시설계 용역추진중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8년 (2019~2023)	2018년 3회 투자심사 신청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지역발전팀	이남재 (행) 2810	여형구 (행) 4606	이은철 (행) 4627

스마트시티 광역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스마트도시 구축
	세부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통 계 목	시설비 및 감리비 (401-01, 401-02)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충청남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을 통한 광역 통합플랫폼 구축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청사 내
- 사업 기간 : 2020. 6월 ~ 2021. 5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200,000천원
※ 증감 사유 : 국토부 공모선정('20년 2월)에 따른 추경 예산 편성
- 사 업 량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남 광역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 지원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이라 한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 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스마트시티 광역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 1,200,000천원(국비 600,000천원, 도비 600,000천원) ○ 시설비 : 1,180,000천원 · 서버 및 하드웨어 x 1식 = 153,500천원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x 1식 = 448,400천원 · 상용소프트웨어 x 1식 = 573,000천원 · 기타장비 x 1식 = 5,100천원 ○ 감리비 : 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200,000	-	-	1,200,000	1,200,000	-	
국 비	600,000	-	-	600,000	600,000	-	국고
도 비	600,000	-	-	600,000	60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스마트혁신도시팀	이남재 (행) 2810	윤종한 (행) 4604	이혜원 (행) 2814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지원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스마트도시 구축
	세부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위치 : 공주시, 부여군, 태안군

○ 예 산 액 : 2,340,000천원 (2020년 사업비 총액 : 3,600,000천원)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부여군, 태안군

○ 지원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5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이라 한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 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지원 : 3,600,000천원 (국비 1,800,000, 도비 540,000, 시군비 1,260,000)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3식(공주·부여·태안) = 3,600,000천원 ※ 1개소 사업비 : 1,200,000천원(국600,000, 도180,000, 시군 420,000) ※ 도비 180,000천원 감액사유 : 당초 공모선정을 위하여 4개소 지원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기초3개소, 광역1개소(道 직접시행) 선정으로 1개소 지원사업비(180백만원) 감액 * 광역사업비는 시설비 및 감리비 1,200,000원(국600,000 도600,000) 편성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3식(공주·부여·태안) = 3,600,000천원

※ 도비 180,000천원 감액사유 : 당초 공모선정을 위하여 4개소 지원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기초3개소, 광역1개소(道 직접시행) 선정으로 1개소 지원사업비(180백만원) 감액

* 광역사업비는 시설비 및 감리비 1,200,000원(국600,000 도600,000) 편성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600,000	-	2,862,000	3,600,000	738,000	-	
국 비	1,800,000	-	1,260,000	1,800,000	540,000	-	
도 비	540,000	-	720,000	540,000	-180,000	-	
시군비	1,260,000	-	882,000	1,260,000	378,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60,000	1,56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스마트혁신도시팀	이남재 (행) 2810	윤종한 (행) 4604	이혜원 (행) 2814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스마트도시 구축
	세부사업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백제문화 세계유산도시의 보존·활용을 위해 데이터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조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스마트시티 선도모델 발굴
- 사업 위치 : 공주시·부여군
- 사업 기간 : 2020. 1월 ~ 2021.12월(신규 사업)
- 예 산 액 : **2,600,000천원** (2020년 사업비 총액 : 4,000,000천원)
- 사 업 량 :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1식
 - ※ 증감 사유 : 국토부 공모선정('20년 2월)에 따른 국비 2,000,000천원 증액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부여군
- 사업 내용 : 문화·관광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도시 서비스 적용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2항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 4,000,000천원 (국비 2,000,000, 도비 600,000, 시군비 1,400,000) ○ 스마트타운 조성* x 1식 = 4,000,000천원 * 스마트수행여행, 백제타임머신 스테이션, 스마트주차장, 백제쌍쌍(공유전기자전거) 등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000,000	-	600,000	4,000,000	3,400,000	-	신규
국 비	2,000,000	-	-	2,000,000	2,000,000	-	국고
도 비	600,000	-	600,000	600,000	-	-	
시군비	1,400,000	-	-	1,400,000	1,40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스마트혁신도시팀	이남재 (행) 2810	윤종한 (행) 4604	황한선 (행) 4630

스마트시티 사업지원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
	세부사업	국고반환금 반환 등
	통 계 목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2019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국고 이자 반납
- 사업 기간 : 2020. 12월 중
- 예 산 액 : **566천원**
 - ※ 증감 사유 : 2019년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 사 업 량 : 국고보조금 이자납부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2019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천안·아산시
- 사업기간 : 2019. 1. ~2020. 12.
- 사업예산 : 총 24억원(국12억 도3.6억 시군8.4억)
- 사업내용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을 통한 도시안전망 및 골든타임 확보

- 지원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스마트시티 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 566천원(전액 도비) ○ 국고보조금 이자 : $800,000\text{천원} \times 43/365 \times 0.6/100 = 566\text{천원}$ ※ 산출식 : (교부금액)×(이자발생일/365) × (도 예금이율)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66	-	-	566	566	-	국고이자반납
국 비	-	-	-	-	-	-	
도 비	566	-	-	566	566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60,000	1,56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스마트혁신도시팀	이남재 (행) 2810	윤종한 (행) 4604	이혜원 (행) 2814

건축도시과



건축도시과

1.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34
2. 광고물등의 정비 지원사업 36
3. 건축경관디자인 컨설팅 38
4.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40
5.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42
6. 새뜰마을 환경 개선 사업 44
7.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 46
8. 도시재생사업 48
9. 소규모 재생사업(공주) 50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정책사업	주택건설 및 운영
	단위사업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세부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통 계 목	출자금 (502-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민선 7기 공약사업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건설형 6개지구 : 아산, 천안, 당진, 예산, 홍성, 서천)
- 사업 기간 : 2019.01.01. ~ 2022.12.31.(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비 : 240,369,700천원
- 예산액 : 49,506,840천원
- ※ 증감 사유 : (도비)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출자계획금액 중 '20년 잔여분, (국비) 국비지원기준 상향조정
- 사업량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선도사업 1,000호 공급(건설형 900호, 매입형 100호)
- 사업시행방법 : 공사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개발공사
- 사업 내용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36㎡, 44㎡, 59㎡)
- 지원 근거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세제지원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2020년 사업비 총액 산출기초] ○ 2020년 총사업비 : 49,506,840천원 - (국비) 행복주택 국비지원단가 상향에 따른 첫사업 국비반영 : 4,506,840천원 · 4,506,840천원 : 37,557천원(호당)×600호×20%(1년차 지원금액) - (도비) 10,000,000천원 - (지역개발기금) 35,000,000천원 [총사업비 산출기초] 총사업비 2,404억원(국비 338억원, 기금 350억원 도비 717.5억원, 기타 998.5억원) ○ 건축비 1,752억원 : 호당 평균건축비 194,661천원 × 900호 - 호당 평균 건축비(194,661천원) = 24.2평(80㎡) × 8,025천원(재정지원단가) · (국비) 37,557천원 : 15.6평(재정지원면적) × 8,025천원(재정지원단가) × 30% · (주택도시기금) 50,076천원 : 15.6평(재정지원면적) × 8,025천원(재정지원단가) × 40% · (임대보증금) 45,000천원 : 5천만원(59㎡)×60% + 4천만원(44㎡)×30% + 3천만원(36㎡)×10% · (도비 및 부담금) 62,028천원 : 호당평균건축비 - (국비 + 기금 + 임대보증금)	

산출 기초	* 평균공급면적(80㎡) $[90\text{㎡}(59\text{㎡형 공급면적})\times 60\%] + [70\text{㎡}(44\text{㎡형 공급면적})\times 30\%] + [50\text{㎡}(36\text{㎡형 공급면적})\times 10\%]$ ○ 매입비(주택) 200억원 : 호당 매입비 200백만원 × 100호 - (도비) 5,750,000천원 : 57,500천원×100호, (공사) 9,250,000천원 : 92,500천원 × 100호 - (임대보증금) 5,000,000천원 : 50,000천원 × 100호 ○ 매입비(부지) 29,177백만원 : 첫사업부지 25,000백만원+후속사업부지 4,177백만원 ○ 예비비 15,997백만원
-------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40,369,700	-	39,300,000	49,506,840	10,206,840	190,862,860	
국 비	33,801,300	-	4,300,000	4,506,840	206,840	29,294,460	국 고
주택도시기금	45,068,400	-	-	-	-	45,068,400	충남개발공사
도 비	61,750,000	-	-	-	-	61,750,000	
부담금	35,000,000	-	35,000,000	35,000,000	-	-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10,000,000	-	-	10,000,000	10,000,000	-	
기 타	54,750,000	-	-	-	-	54,750,000	충남개발공사

* 보조율 : 국비 14%, 주택도시기금 18%, 도비 30%, 지역개발기금 15%, 기타 23%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더행복한주택팀	윤영산 (행) 2820	이정호 (행) 4645	김태영 (행) 4647

광고물등의 정비 지원 사업	정책사업	공공디자인 선진화
	단위사업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
	세부사업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05.0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55,000천원
- ※ 증감 사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2019년 옥외광고사업 기금수익금(국비) 전입에 따른 증액분 반영
- 사 업 량 : 1식(옥외광고 게시대 설치·정비 등)
- 사업시행방법 : 보조금 지원으로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등 정비
- 지원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 ①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 비율 및 방법은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광고물등의 정비 지원사업 : 550,000천원(전액 기금) ○ 37,000천원 * 15개 시군 = 55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55,000	-	-	555,000	555,000	-	신규
국 비	555,000	-	-	555,000	555,000	-	기금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윤영산 (행) 2820	김선아 (행) 4643	김종현 (행) 4659

건축경관디자인 컨설팅	정책사업	공공디자인선진화
	단위사업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관리
	세부사업	주요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관리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총괄·공공건축가 지문을 통한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적 운영,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업무역량 강화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 사업 기간 : 2020.05.01. ~ 2020.10.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2,523천원
- ※ 증감 사유 : 2019년 공모 선정된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사업’(국토부)의 집행 잔액을 추경에 반영
- 사 업 량 : 도 및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및 도시재생사업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도 및 시·군의 공공건축 사업 등에 총괄·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해당 사업에 대한 지문 및 조정
- 지원 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건축경관디자인 컨설팅 : 42,523천원(전액 도비) ○ 지문 1식 : 42,523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2,523	-	-	42,523	42,523	-	
국 비	-	-	-	-	-	-	
도 비	42,523	-	-	42,523	42,523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0,000	37,477	42,523	46.8%	-	집행기간 2019.7~12월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공공건축팀	윤영산 (행) 2820	박신 (행) 4646	박상훈 (행) 4666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정책사업	주거환경개선
	단위사업	주거환경개선
	세부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1. 주택단지 내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
2.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자전거보관대, 보안등, CCTV 등의 설치 및 보수
4.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및 보수
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문의 유지·보수·설치사업

□ 산출 근거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 1,550,000천원(도비 775,000, 시비 775,000) ○ 지정 액 : 950,000천원(도비 475,000, 시비 475,000) · 공주시 노후 공용시설 개선 : 120,000천원(도비 60,000, 시비 60,000) · 서산시 노후 공용시설 개선 : 800,000천원(도비 400,000, 시비 400,000) · 당진시 노후 공용시설 개선 : 30,000천원(도비 15,000, 시비 15,000) ○ 추경 증 : 600,000천원(도비 300,000, 시비 300,000) · 천안시 노후 공용시설 개선 : 300,000천원(도비 150,000, 시비 150,000) · 서산시 노후 공용시설 개선 : 300,000천원(도비 150,000, 시비 1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550,000	-	950,000	1,550,000	600,000	-	
국 비	-	-	-	-	-	-	
도 비	775,000	-	475,000	775,000	300,000	-	
시군비	775,000	-	475,000	775,000	30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45,000	269,783	216	41.8%	375,0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더행복한주택팀	윤영산 (행) 2820	이정호 (행) 4645	전유리 (행) 2825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정책사업	주거환경개선
	단위사업	주거환경개선
	세부사업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통 계 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공공 임대 주택의 시설 개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홍성군 일원
- 사업 기간 : 2020.01.0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710,000천원**(2020년 사업비 총액 : 1,092,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합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546,000천원 확정에 따른 도비 부담 증액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세대내부) 도배, 전등·수전·신발장 교체, 창호류 및 욕실 개선,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공용시설) 창호류, 배관, 소방기계·전기 설비 등 노후 시설 교체, CCTV성능개선, 장애인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시설개선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16조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16조(주거복지사업)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7.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 1,092,000천원(국비 546,000, 도비 164,000, 시군비 382,000) ○ 보령 : 744,000천원(국비 372,000, 도비 111,000, 시비 261,000) ○ 서산 : 150,000천원(국비 75,000, 도비 23,000, 시비 52,000) ○ 논산 : 138,000천원(국비 69,000, 도비 21,000, 시비 48,000) ○ 홍성 : 60,000천원(국비 30,000, 도비 9,000, 군비 21,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92,000	-	480,000	1,092,000	612,000	-	
국 비	546,000	-	-	546,000	546,000	-	국고
도 비	164,000	-	150,000	164,000	14,000	-	
시군비	382,000	-	330,000	382,000	52,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이상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458,000	280,828	177,172	61%	177,0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더행복한주택	윤영산 (행) 2820	이정호 (행) 4645	전유리 (행) 2825

새뜰마을 환경 개선 사업	정책사업	주거환경개선
	단위사업	주거환경개선
	세부사업	취약지역개조(도시)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재해·위생·안전 등 취약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집수리 지원 등을 통한 노후·불량 주거여건 개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홍성군, 금산군, 서천군, 논산시, 청양군, 예산군
- 사업 기간 : 2018.01.01 ~ 2024.12.31(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비 : 24,730,218천원
- 예산액 : **4,240,216천원**(2020년 사업비 총액 : 5,367,716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20년 3월에 공모선정(논산시, 청양군, 예산군)되어 사업비(국비) 확정에 따라 반영
- 사업량 : 새뜰마을사업 7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홍성군, 금산군, 서천군, 논산시, 청양군, 예산군
- 사업 내용 : 안전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휴먼케어(행복마을 공방),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마을공동체교육) 등
- 지원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 제34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새뜰마을사업 : 5,367,716천원 (국비 3,757,000, 도비 483,216, 시군비 1,127,500) ○ 보령 : 1,203,143천원(국비 842,000, 도비 108,543, 시군비 252,600) ○ 홍성 : 543,286천원(국비 380,000, 도비 48,786, 시군비 114,500) ○ 금산 : 667,000천원(국비 467,000, 도비 60,000, 시군비 140,000) ○ 서천 : 1,000,000천원(국비 700,000, 도비 90,000, 시군비 210,000) ○ 논산 : 731,429천원(국비 512,000, 도비 65,829, 시군비 153,600) ○ 청양 : 611,429천원(국비 428,000, 도비 55,029, 시군비 128,400) ○ 예산 : 611,429천원(국비 428,000, 도비 55,029, 시군비 128,4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4,730,218	5,719,571	3,413,429	5,367,716	1,954,287	13,642,931	
국 비	17,395,360	4,004,000	2,389,000	3,757,000	1,368,000	9,634,360	균특
도 비	2,199,818	514,671	307,329	483,216	175,887	1,201,931	
시군비	5,135,040	1,200,900	717,100	1,127,500	410,400	2,806,640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130,813	5,130,813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도시재생팀	윤영산 (행) 2820	김두기 (행) 4644	이형기 (행) 2824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정책사업	주거환경개선
	단위사업	주거환경개선
	세부사업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를 통해 자살 및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사고를 예방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공동주택
- 사업 기간 : 2020.04.0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
- 사 업 량 : 준공후 15년·10층이상 공동주택 12개 단지 62개소
※ 증감 사유 :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따른 신규사업 시범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관리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 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 내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
2.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자전거보관대, 보안등, CCTV 등의 설치 및 보수
4.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및 보수
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설치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사업 : 100,000천원(전액 도비) ○ 62개소 x 1,600천원 ≒ 100,000천원 ※ 사업량 : 12개단지 62개소, 지원단가 : 개소당 약1,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	-	100,000	10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100,000	-	-	100,000	10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더행복한주택	윤영산 (행) 2820	이정호 (행) 4645	전유리 (행) 282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42,916,000	66,600,000	54,777,400	63,542,000	8,764,600	112,774,000	
국 비	121,463,000	39,960,000	34,925,000	38,125,000	3,200,000	43,378,000	균특
도 비	24,292,600	7,992,000	6,985,000	7,625,000	640,000	8,675,600	
시군비	97,160,400	18,648,000	12,867,400	17,792,000	4,924,600	60,720,400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60%, 도비 12%, 시군비 28%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1,274,400	31,274,4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도시재생팀	윤영산 (행) 2820	김두기 (행) 4644	윤병상 (행) 4660

소규모 재생사업(공주)	정책사업	도시재생
	단위사업	도시재생
	세부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소규모 재생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관련 지역 주민이 제안하는 소규모 시설사업, 공동체 형성 S/W 사업을 지원하여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강화
- 사업 위치 : 공주시(1개소)
- 사업 기간 : 2020.05.01. ~ 2021.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20,000천원** (2020년 사업비 총액 : 20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19년 하반기 공모 선정 및 '19년 12월 국비 교부 알림에 따라 본예산 반영 불가
- 사 업 량 :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업 내용 :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1개소 추진
- 지원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개정 2016.1.19.>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소규모재생사업(공주시) : 200,000천원(국비 100,000, 도비 20,000, 시군비 80,000) ○ 200,000천원(국비 100,000천원, 도비 20,000천원, 시비 8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	-	200,000	200,000	-	
국 비	100,000	-	-	100,000	100,000	-	균특
도 비	20,000	-	-	20,000	20,000	-	
시군비	80,000	-	-	80,000	8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64,912	564,912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1)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도시재생팀	윤영산 (행) 2820	김두기 (행) 4644	김희중 (행) 4662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1. 시내버스 재정지원(코로나19 대응) 58
2. 서천군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60
3. 당진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62
4. 버스 운전자 양성교육 64
5. 대중교통이용지원사업 66
6. 시외버스 재정지원(코로나19 대응) 68
7.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70
8. 저상버스 도입 지원 74
9.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76
10. 관외전용차량 운영지원 78
11. 관외전용차량 도입지원 80
12. 2020년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산정 용역 82
13. 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코로나19 대응) .. 84

14. 개인택시 근무여건 개선(코로나19 대응)	86
15.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88
16. 금산군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개보수	90
17. 천안시 두정역 환승시설 설치	92
18. 교통안전업무 차량 임차	94
19. 부여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	96
20. 부여 신리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98
21. 태안군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100
22. 예산군 주교리 공영주차장 개선사업 ..	102
23. 천안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 ..	104
24. 서천군 장항읍 공영주차장 조성	106
25. 어린이보호구역 등 과속카메라설치사업 ...	108
26. 금산 상리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	110
27. 논산시 공영주차타워 조성	112
28. 논산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114

29. 계룡 엄사제척지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	116
3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18
3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120
32.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시군)	122
33.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24
34. 이동식 과속단속부스 설치(도)	126
35. 이동식 과속단속부스 설치(시군)	128
36. ITS 구축 사업	130
37. 감응신호 구축	132
38.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134

시내버스 재정지원(코로나19 대응)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시내버스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 이용객 감소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휴업, 감회 등 필요불가결한 상황에서 비수익노선의 운행보전에 필요한 재정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500,000천원**(2020년 사업비 총액 : 9,00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대응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 사 업 량 : 시내·농어촌버스 18개 업체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비수익노선 운행보전에 필요한 재정지원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제2호,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5. 그밖에 도지사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 9,000,000천원(부담금 4,500,000, 시·군 4,500,000) ○ 시내·농어촌버스 18개 업체의 비수익노선 운행보전 지원금 : 9,0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000,000	-	9,000,000	9,000,000	0	-	
국 비	-	-	-	-	-	-	
도 비	-	-	4,500,000	-	-4,500,000	-	
시군비	4,500,000	-	4,500,000	4,500,000	-	-	
기타(부담금)	4,500,000	-	-	4,500,000	4,500,000	-	

* 보조율 : 부담금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최종인 (행) 2840	윤태노 (행) 4671	이종철 (행) 2842

서천군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시내버스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관내 신규·노후버스승강장 설치
- 사업 위치 : 서천군 내 10곳
- 사업 기간 : 2020. 5. ~ 12.(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산액 : **50,000천원** (2020년 사업비 총액 : 10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지역현안 건의사업)
- 사업량 : 1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 내용 :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
- 지원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조례 제3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법제50조제2항의 가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서천군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 100,000천원(도비 50,000, 시군비 50,000) ○ 10,000,000원*10개소=100,0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추경예산(B)	증감(B-A)		
계	100,000	-	-	100,000	100,000	-	
국 비	-	-	-	-	-	-	
도 비	50,000	-	-	50,000	50,000	-	
시 비	50,000	-	-	50,000	5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최종인 (행) 2840	윤태노 (행) 4577	이종철 (행) 2842

당진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시내버스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관내 신규·노후버스승강장 설치
- 사업 위치 : 당진시 송산면 명산리 외 2곳
- 사업 기간 : 2020. 5. ~ 7월(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산액 : **15,000천원** (2020년 사업비 총액 : 3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지역현안 건의사업)
- 사업량 : 버스승강장 설치 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
- 사업내용 : 버스승강장 설치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조례 제3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법제50조제2항의 가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대중교통수단 환승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당진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 30,000천원(도비 15,000, 시군비 15,000) ○ 10,000천원 * 3개소 = 3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추경예산(B)	증감(B-A)		
계	30,000	-	-	30,000	30,000	-	
국 비	-	-	-	-	-	-	
도 비	15,000	-	-	15,000	15,000	-	
시 비	15,000	-	-	15,000	15,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최종인 (행) 2840	윤태노 (행) 4577	이종철 (행) 2842

버스 운전자 양성교육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버스운전자 양성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8-10)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충남형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교통운송서비스 제공,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제고
- 사업 위치 : 충남교통연수원(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83)
- 사업 기간 : 2020. 3월 ~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85,700천원
-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감액 지원에 따른 도비분담 비율 조정 및 양성인원 조정
- 사 업 량 : 버스운전자 양성 60명
- 사업시행방법 : 충남교통연수원 위탁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버스운전자격 취득자에 대한 실무·체험교육을 통해 우수 운전인력 양성
- 지원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버스 운전자 양성교육 : 285,700천원(국비 228,560, 도비 57,140) ○ 홍보비(신문, 교차로, 홍보책자 등) : 9,050천원 ○ 예비소집 및 신규교육 : 15,400천원 ○ 심화교육(상주체험센터) : 182,510천원 ○ 취업알선 및 노선교육(업체) : 74,930천원 ○ 출장비 등 운영비 : 3,81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85,700	-	357,125	285,700	△71,425	-	
국 비	228,560	-	285,700	228,560	△57,140	-	국고
도 비	57,140	-	71,425	57,140	△14,285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80%, 도비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57,125	243,880	113,245	68.3%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	최 종 인 (행) 2840	최 기 호 (행) 4561	전 선 희 (행) 4562

대중교통이용지원사업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장상호자금(308-01) 전산개발비(207-02)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약자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노인 등 대중교통(시내·농어촌버스) 이용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000,000천원** (2020년 사업비 총액 : 29,50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75세 이상 도민('19.7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포함('20.7월~) 수혜자 확대
- 사업 량 : 298천명(충남거주 75세이상 도민 190, 등록장애인 92, 국가유공자 및 유족 16)
- 사업시행방법 : 도 및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도 및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75세 이상 도민 등의 대중교통(시내·농어촌버스) 이용에 따른 운송업체 손실금 지원
 - 충남형 교통카드 통합관리시스템 기능 보강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할인율)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별 이용요금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노인 등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별 이용요금 할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도지사는 충청남도 내의 시·군에서 사용되는 교통카드의 발급·이용 등을 위한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형 교통카드 통합관리시스템 기능보강 : 전산개발비 500,000천원 ○ 주요내용 : 교통카드 관리시스템 추가 개발 ○ 산출기초 : 500,000천원×교통카드 시스템 추가구축(카드 권종 1종 → 6종) 1식 = 500,000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지원사업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000,000천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자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추가필요 ○ 산출기초 - (75세 이상 노인) 190천명 × 107천원(월평균 3.43회) = 20,300,000천원 - (장애인) 92천명 × 82천원(중증·경증 월평균 2.63회) = 7,540,000천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12천명 × 96천원(월평균 3.08회) = 1,160,000천원 ※ 시내버스(1,350원), 농어촌버스(1,250원) 왕복 기준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9,500,000	-	20,000,000	29,500,000	9,500,000	-	
국 비	8,832,000	-	8,832,000	8,832,000	-	-	기금
도 비	6,168,000	-	1,168,000	6,168,000	5,000,000	-	
시군비	14,500,000	-	10,000,000	14,500,000	4,50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기금 30%, 도비 21%, 시군비 49%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608,000	7,458,255	149,745	98.1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9.7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최 종 인 (행) 2840	최 기 호 (행) 4561	윤 종 각 (행) 4563

시외버스 재정지원(코로나19 대응)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시외버스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운수업계보조금 (307-09)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 이용객 감소에 따른 시외버스 노선 휴업, 감회 등 필요불가결한 사항에서 비수익노선의 운행보전에 필요한 재정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에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00,000천원
 -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대응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 사 업 량 : (주)금남고속 등 5개 업체 운행 노선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비수익노선 운행보전에 필요한 재정지원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제2호,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5. 그밖에 도지사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시외버스 재정지원 : 2,000,000천원(전액 부담금) ○ 시외버스 5개 업체의 비수익노선 운행보전 지원금 : 2,0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0	-	2,000,000	2,000,000	-		
국 비	-	-	-	-	-		
도 비	-	-	2,000,000	-	△2,000,000		
시군비	-	-	-	-	-		
기타(부담금)	2,000,000	-	-	2,000,000	2,000,00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부담금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최종인 (행) 2840	윤태노 (행) 4671	김재식 (행) 4567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통 계 목	민간위탁금(307-05) 사무관리비(2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사업 위치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50, 내포아르페온 2차 오피스텔 4층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70,000천원
 - ※ 증감 사유 : 운영효율성 및 최적 배차 수행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및 배차시스템 임차료
- 사 업 량 : 광역이동지원센터 1개소 운영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및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주)케이티아이에스, 충청남도

- *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 위탁기간 : 2019. 8. 1. ~ 2022. 7. 31. (3년간)
 - 수탁기관 : 주식회사 케이티아이에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 총사업비 : 금2,586,521,53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위탁사무 :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상담인력 운영 등

- 사업 내용 :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 지원근거 : 「교통약자법」 제16조 및 「충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이동지원센터와 별도로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의 배차관리
2.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정보수집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4.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산출 기초	■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 민간위탁금 990,000천원 (기정 예산) ○ 운영인력 : 센터장 1명, 관리자 1명, 주간상담원 15명, 야간상담원 4명 ■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 사무관리비 20,000천원 (추경 예산) ○ 위 치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50, 내포아르페온 2차 404호, 405호 ○ 임차기간 : 2019. 8. 1. ~ 2022. 12. 31. ○ 임차금액 : 660,000원(부가세포함) × 2호실 × 12월 = 15,840,000원 ○ 관리비 : 346,000원(부가세포함) × 12월 = 4,152,000원 ■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배차시스템 임차료 : 사무관리비 60,000천원 (추경 예산) ○ 사 업 명 :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자동배차시스템 도입 ○ 도입시기 : 2020. 7월 ○ 주요내용 - 지리, 위치정보, 실시간 교통정보 등의 빅데이터 가공을 통한 요일·시간대별 차량 최단 이동경로 수립 - 콜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상황별 입력과 적용이 가능 하도록 구현 - 최단시간 내 도착예정 차량을 수배하는 방식으로 배차관리에 최적화된 딥러닝 알고리즘 탑재 - 예측운행시간과 실제운행시간의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다음 경로 배차에 적용하여 배차 효율 극대화 ☞ 최적의 배차수행으로 신속한 배차 서비스 제공 및 상담원의 배차 후속처리 업무 경감으로 운영비(인 건비) 절감 가능 ○ 임차금액 산출기초 : 10,000천원(부가세포함) × 6월 = 60,000천원
총사업 비	1,070,000천원 (도비 1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70,000	-	990,000	1,070,000	80,000	-	
국 비	-	-	-	-	-	-	
도 비	1,070,000	-	990,000	1,070,000	8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92,474	308,412	84,062	78.6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최 종 인 (행) 2840	최 기 호 (행) 4561	김 상 은 (행) 4564



저상버스 도입 지원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저상버스 도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 사업 위치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56,596천원** (2020년 사업비 총액 : 1,713,192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사유 : 국비 교부대수 조정(30대→19대)
- 사 업 량 : 19대 (천안시 8대, 아산시 6대, 서산시 2대, 당진시 3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 사업 내용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전기·수소 저상버스 도입
- 지원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충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노선버스의 이용보장 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저상버스의 구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저상버스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저상버스 도입 지원 : 1,713,192천원(국비 856,596, 시군비 856,596) ○ 19대 × 90,168천원(대당 보조금) = 1,713,19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713,192	-	2,391,168	1,713,192	△677,976	-	
국 비	856,596	-	1,195,584	856,596	△338,988	-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856,596	-	1,195,584	856,596	△338,988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35,062	1,235,062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융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최 종 인 (행) 2840	최 기 호 (행) 4561	김 상 은 (행) 4564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시·군의 운영방법 통일 등을 통한 원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군 특별교통수단 사업비 일부를 지원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4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7. 1. ~ 12. 31.(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350,000천원
 - ※ 증감사유 : 원활한 사업 운영 및 시·군 협조 동력 확보를 위한 도비 지원
- 사 업 량 : 155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4개 시·군
- 사업 내용 :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 지원
- 지원근거 : 충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충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교통약자 증진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 350,000천원(전액 도비) ○ (기본보조) 155대×4,000천원(기본보조)× 6/12월 = 310,000천원 ○ (인센티브) 80대×1,000천원(인센티브)× 6/12월 = 40,000천원 ※ 사업비 기준 : (1대당) 기본보조 4,000천원, 인센티브 1,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50,000	-	-	350,000	35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350,000	-	-	350,000	35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시·군 운영비 부담액 총8,666,000천원의 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최 종 인 (행) 2840	최 기 호 (행) 4561	김 상 은 (행) 4564

관외전용차량 운영지원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광역이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외 이동전용 교통약자 차량 운영지원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코자 함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7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7. 1. ~ 12. 31.(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225,000천원
 - ※ 증감사유 : 관외전용차량 최초 도입으로 운영비 전액 도비 지원
- 사 업 량 : 9대 (천안 1, 보령 1, 아산 3, 서산 1, 논산 1, 서천 1, 홍성 1)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7개 시·군
- 사업 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외 전용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 지원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관외전용차량 운영지원 : 225,000천원(전액 도비) ○ 9대×50,000천원(대당 연간 운영비)×6/12월 = 22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25,000	-	-	225,000	225,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225,000	-	-	225,000	225,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당없음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최 종 인 (행) 2840	최 기 호 (행) 4561	김 상 은 (행) 4564

관외전용차량 도입지원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광역이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외 이동전용 교통약자 차량 도입지원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코자 함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7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7. 1. ~ 12. 31.(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245,700천원**(2020년 사업비 총액 : 378,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사유 : 국비 9대 추가교부에 따른 도 및 시·군비 매칭
- 사 업 량 : 9대 (천안 1, 보령1, 아산3, 서산1, 논산1, 서천1, 홍성1)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7개 시·군
- 사업 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외 전용 특별교통수단 도입
- 지원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관외전용차량 도입지원 : 378,000천원(국비 189,000, 도비 56,700 시군비 132,300) ○ 9대×42,000천원(대당 구입단가) = 378,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78,000	-	-	378,000	378,000	-	신규
국 비	189,000	-	-	189,000	189,000	-	국고
도 비	151,200	-	-	56,700	56,700	-	
시군비	37,800	-	-	132,300	132,3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최 종 인 (행) 2840	최 기 호 (행) 4561	김 상 은 (행) 4564

2020년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산정 용역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택시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연구용역비(207-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택시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히 반영될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택시 운임·요율의 결정·조정 여부 검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내
- 사업 기간 : 2020. 5 ~ 11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10,000천원**
 - ※ 증감사유 : 용역기간 단축으로 예산절감 (135,000천원→110,000천원)
- 사 업 량 : 택시 운임·요율 분석 연구용역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택시 운송원가를 분석하여 적정 운임·요율안 제시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요령 제4조

제8조 (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운임·요율의 결정·조정원칙) 관할관청은 운임·요율을 결정·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5. 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 및 모범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요율 수준에 적절한 차이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20년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산정용역 : 110,000천원(전액 도비) * 택시 운송원가 분석후 적정 운임·요율 제시를 위한 분석용역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10,000	-	135,000	110,000	△25,000	-	
국 비	-	-	-	-	-	-	
도 비	110,000	-	135,000	110,000	△25,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최 종 인 (행) 2840	최 기 호 (행) 4561	김 상 은 (행) 4564

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코로나19 대응)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택시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 이용객 감소에 따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생계유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 사업 위치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 1. 1. ~ 12. 31.(단년도 사업)
- 예산액 : **1,500,000천원** (2020년 사업비 총액 : 3,00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대응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 사업량 : 법인택시운수종사자 3,000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법인택시 운전원 생계비에 필요한 재정지원
- 지원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4조,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정지원대상사업의 범위)

- 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해당하는 사업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4.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문화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노사문화 정착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법인택시 근무여건개선 : 3,000,000천원(부담금 1,500,000, 시군 1,500,000) ○ 1,000,000원(원가)×3,000명(법인택시운수종사자 수) = 3,0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000,000	-	3,000,000	3,000,000	-	-	
국 비	-	-	-	-	-	-	
도 비	-	-	1,500,000	-	△1,500,000	-	
시군비	1,500,000	-	1,500,000	1,500,000	-	-	
부담금	1,500,000	-	-	1,500,000	1,500,000	-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부담금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최 종 인 (행) 2840	윤 태 노 (행) 4671	김 단 비 (행) 4568

개인택시 근무여건 개선(코로나19 대응)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택시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 이용객 감소에 따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생계유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 사업 위치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00,000천원**(2020년 사업비 총액 : 4,00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대응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 사 업 량 : 개인택시운수종사자 4,000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개인택시 운전원 생계비에 필요한 재정지원
- 지원근거 :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정지원대상사업의 범위)

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4.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문화·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노사문화 정착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개인택시 근무여건개선 : 4,000,000천원(부담금 2,000,000, 시군 2,000,000) ○ 추경예산: 1,000천원 × 4,000명(개인택시운수종사자 수) = 4,0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000,000	-	4,000,000	4,000,000	-	-	
국 비	-	-	-	-	-	-	
도 비	-	-	2,000,000	-	△2,000,000	-	
시군비	2,000,000	-	2,000,000	2,000,000	-	-	
부담금	2,000,000	-	-	2,000,000	2,000,000	-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부담금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최종인 (행) 2840	윤태노 (행) 4671	김단비 (행) 4568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사업용 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 사업 대상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월 ~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20,600천원** (2020년 사업비 총액 : 301,5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배분[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1070(2020. 3. 12.)호]에 따른 예산편성
- 사 업 량 : '20.~'21. 6월 기간 동안 신규 제작·조립·수입되는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603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대당 50만원(국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
- 지원 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 제2항, 동법 제5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 301,500천원(국비 120,600, 시군비 120,600, 자부담 60,300) ○ 603대 × 500천원 = 301,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01,500	-	-	301,500	301,500	-	
국 비	120,600	-	-	120,600	120,600	-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120,600	-	-	120,600	120,600	-	
기 타	60,300	-	-	60,300	60,300	-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40%, 시·군비 40%, 기타(자부담)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76,000	776,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팀	최 종 인 (행) 2840	김 홍 근 (행) 4566	박 지 훈 (행) 4578

금산군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개보수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대중교통시설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기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다중이용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후곶천길 77
- 사업 기간 : 2020. 5. ~ 12.(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 (2020년 사업비 총액 : 20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 개선(지역현안 건의사업)
- 사 업 량 :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금산군
- 사업 내용 : 금산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조례 제3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법제50조제2항의 가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대중교통수단 환승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금산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 200,000천원(도비 100,000, 시군비 100,000) ○ 설계용역비 1식 : 13,000천원 ○ 3동 리모델링 공사 1식 187,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	-	200,000	20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100,000	-	-	100,000	100,000	-	
시군비	100,000	-	-	100,000	10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최종인 (행) 2840	윤태노 (행) 4577	김재식 (행) 4567

천안시 두정역 환승시설 설치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대중교통시설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기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원활한 연계환승체계로 개선하여 두정육교 교통혼잡 완화 및 보행안전사고 방지
- 사업 위치 :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 남측역사 환승주차장
- 사업 기간 : 2020. 5. ~ 2021.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00천원** (2020년 사업비 총액 : 60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두정역 환승시설 설치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및 보행안전사고 방지(지역현안 건의사업)
- 사 업 량 : 환승시설 1식 (면적 4,132㎡)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두정역 동측의 환승주차장에 택시, 셔틀버스, 승용차 등 타수단과의 환승시설 설치
- 지원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0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0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연계교통시설·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두정역 환승시설 설치 : 600,000천원(도비 300,000, 시군비 300,000) ○ 145천원 × 4,131㎡ ≒ 600,000천원 ※ 조성비 단가 : 145천원(㎡당), 환승주차장 면적 : 4,131㎡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600,000	-	-	600,000	60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300,000	-	-	300,000	300,000	-	
시군비	300,000	-	-	300,000	30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최종인 (행) 2840	윤태노 (행) 4577	김재식 (행) 4567

교통안전업무 차량 임차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교통안전관리 사업
	세부사업	교통안전관리 업무 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안전 전용차량 배정으로 경찰청과 공동 교통안전 계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원
 - ※ 증감 사유 : 당초 운영하기로 계획된 충남지방경찰청 협의 결과, 운영 불가로 사업계획 취소
- 사 업 량 : 교통안전업무 차량(암행순찰차) 임차 및 운영 1대
- 사 업 방 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 업 내용 : 교통안전업무 차량(암행순찰차) 임차 및 운영 1대
- 지원 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교통안전업무 차량 임대 : 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	-	12,000	-	△12,000	-	
국 비	-	-	-	-	-	-	
도 비	-	-	12,000	-	△12,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고 희 주 (행) 4572

부여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교통안전관리 사업
	세부사업	교통안전관리 업무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기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어린이가 보호되지 못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없도록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 사업 위치 : 충남 부여군 초등학교
- 사업 기간 : 2020. 5월 ~ 12월(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40,000천원**(2020년 사업비 총액 : 8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부여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취소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설치로 변경
- 사 업 량 :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부여군
- 사업 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지원 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80,000천원(도비 40,000, 군비 40,000) ○ 40,000천원 × 2개소 : 8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80,000	-	-	80,000	8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40,000	-	-	40,000	40,000	-	
시군비	40,000	-	-	40,000	4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조 경 상 (행) 2843

부여 신리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교통안전관리 사업
	세부사업	교통안전관리 업무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기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한 대형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소통원활 도모
- 사업 위치 : 충남 부여군 신리 신리사거리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원**
※ 증감 사유 : 부여군 사업취소 요청(민원 및 보상비 등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 불가)
- 사 업 량 :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부여군
- 사업 내용 : 회전교차로 1개소
- 지원 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신리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 0원 ※ 부여군 사업취소 요청(민원 및 보상비 등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 불가)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	-	80,000	-	△80,000	-	
국 비	-	-	-	-	-	-	
도 비	-	-	40,000	-	△40,000	-	
시군비	-	-	40,000	-	△4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조 경 상 (행) 2843

태안군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교통안전관리 사업
	세부사업	교통안전관리 업무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어린이가 보호되지 못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없도록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어린이보호구역
- 사업 기간 : 2020. 7. ~ 10.(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 (2020년 사업비 총액 : 20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과속카메라설치 지원(지역현안 건의사업)
- 사 업 량 : 무인교통단속장비 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태안군
- 사업 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지원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제4항 및 교통안전법 제9조제1항(재정 및 금융조치)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 ①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태안군 스쿨존과속카메라설치 : 200,000천원(도비 100,000, 시군비 100,000) ○무인교통단속장비 5식 * 40,000천원 = 2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	-	200,000	20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100,000	-	-	100,000	100,000	-	
시군비	100,000	-	-	100,000	10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조 경 상 (행) 2843

예산군 주교리 공영주차장 개선사업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교통안전관리 사업
	세부사업	교통안전관리 업무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및 교통불편 해소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169-7
- 사업 기간 : 2020. 7. ~ 11.(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산액 : **300,000천원** (2020년 사업비 총액 : 60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공영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법주정차 등 지역주민 불편 해소(지역현안 건의사업)
- 사업량 : 주차장 1식 A=579m²(주차면 약 20면)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예산군
- 사업 내용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 지원근거 : 주차장법 제21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1항

「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예산군 주교리 공영주차장 개선사업 : 600,000천원(도비 300,000, 시군비 300,000) ○ 공사비 : 200,000천원 ○ 기타(설계비, 부대비 등) : 100,000천원 ○ 보상비 : 3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600,000	-	-	600,000	60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300,000	-	-	300,000	300,000	-	
시군비	300,000	-	-	300,000	30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김 기 윤 (행) 4573

천안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교통안전관리 사업
	세부사업	교통안전관리 업무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어린이가 보호되지 못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없도록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어린이보호구역
- 사업 기간 : 2020. 7. ~ 10.(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 (2020년 사업비 총액 : 20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과속카메라설치 지원(지역현안 건의사업)
- 사 업 량 : 무인교통단속장비 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지원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제4항 및 교통안전법 제9조제1항(재정 및 금융조치)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 ①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천안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 : 200,000천원(도비 100,000, 시군비 100,000) ○무인교통단속장비 5식 * 40,000천원 = 2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	-	200,000	20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100,000	-	-	100,000	100,000	-	
시군비	100,000	-	-	100,000	10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조 경 상 (행) 2843

서천군 장항읍 공영주차장 조성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교통안전관리 사업
	세부사업	교통안전관리 업무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및 교통불편 해소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889-19
- 사업 기간 : 2020. 5. ~ 10(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0,000천원** (2020년 사업비 총액 : 40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공영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법주정차 등 지역주민 불편 해소(지역현안 건의사업)
- 사 업 량 : 공영주차장조성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 내용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 지원근거 : 주차장법 제21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1항

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장항읍 원수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400,000천원(도비 200,000, 시군비 200,000) ○ 부지매입비: 200,000,000원*1식= 200,000,000원 ○ 설계 및 공사비: 200,000,000원*1식= 200,0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00,000	-	-	400,000	40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200,000	-	-	200,000	200,000	-	
시군비	200,000	-	-	200,000	20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김 기 윤 (행) 4573

어린이보호구역 등 과속카메라설치사업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교통안전관리 사업
	세부사업	교통안전관리 업무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어린이가 보호되지 못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없도록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 사업 위치 : 태안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200,000천원(2020년 사업비 총액 : 40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과속카메라설치 지원
- 사 업 량 : 과속카메라 설치 1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태안군
- 사업 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지원 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 400,000천원(도비 200,000, 시군비 200,000) ○ 과속카메라 10개소 × 40,000천원 = 4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00,000	-	-	400,000	40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200,000	-	-	200,000	200,000	-	
시군비	200,000	-	-	200,000	20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조 경 상 (행) 2843

금산 상리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교통안전관리 사업
	세부사업	공영주차장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심각한 주차난 및 교통불편 해소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18-1번지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2,300,000천원 (2020년 사업비 총액 : 4,60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계룡시 사업 취소로 1억을 해당사업으로 내시변경 추진
 - 국토부 요청(문제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지출가능한 사업으로 내시변경 적극 허용)에 따라 내시변경
- 사 업 량 : 공영주차타워 조성(2층 3단) 1식(A=4,953㎡, 254면)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금산군
- 사업 내용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 지원 근거 : 주차장법 제21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1항

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금산 상리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 : 4,600,000천원(국비 2,300,000, 시군비 2,300,000) ○ 공사비 : 4,012,000천원 ○ 설계비 : 224,000천원 ○ 감리비 : 350,000천원 ○ 시설부대비 : 1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600,000	-	4,400,000	4,600,000	200,000	-	신규
국 비	2,300,000	-	2,200,000	2,300,000	100,000	-	균특
도 비	-	-	-	-	-	-	
시군비	2,300,000	-	2,200,000	2,300,000	10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9.6.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김 기 윤 (행) 4573

논산시 공영주차타워 조성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교통안전관리 사업
	세부사업	공영주차장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용자)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보조)

□ 산출 근거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논산시 공영주차타워 조성 : 4,000,000천원(국비 2,000,000, 시군비 2,000,000) ○ 공사비 : 3,915,000천원 ○ 감리비 : 80,000천원 ○ 시설부대비 : 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000,000	-	1,200,000	4,000,000	2,800,000	-	신규
국 비	2,000,000	-	600,000	2,000,000	1,400,000	-	균특
도 비	-	-	-	-	-	-	
시군비	2,000,000	-	600,000	2,000,000	1,40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9.4.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김 기 윤 (행) 4573

논산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교통안전관리 사업
	세부사업	공영주차장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심각한 주차난 및 교통불편 해소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259-2번지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신규사업)
- 총 사업비 : 7,400,000천원
- 예산액 : **100,000천원** (2020년 사업비 총액 : 20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대상지 토지주가 토지보상을 '21년 토지감정 재평가 후 매매하고자 하여 14억을 '논산시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내시변경 추진 * 본 사업은 '21년 추가 14억 배정하여 사업추진
- 사업량 : 공영주차장 조성 1식(A=18,457㎡, 500면)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
- 사업 내용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 지원 근거 : 주차장법 제21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1항

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논산시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 200,000천원(국비 100,000, 시군비 100,000)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200,000,000원 x 1식 = 2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400,000	-	3,000,000	200,000	△2,800,000	7,200,000	신규
국 비	3,700,000	-	1,500,000	100,000	△1,400,000	3,600,000	균특
도 비	-	-	-	-	-	-	
시군비	3,700,000	-	1,500,000	100,000	△1,400,000	3,600,000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9.6.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김 기 윤 (행) 4573

계룡 엄사제척지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교통안전관리 사업
	세부사업	공영주차장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심각한 주차난 및 교통불편 해소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347 외 11필지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3. 12. 31.(다년도 계속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0원**
※ 증감 사유 : 계룡시 사업 취소에 따라, 해당 사업비 1억원 감액 처리
- 사 업 량 :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지하 1층) 1식(A=4,052㎡, 234면)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계룡시
- 사업 내용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 지원 근거 : 주차장법 제21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1항

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계룡 엄사제척지 주거지주차장 조성 : 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	-	200,000	-	△200,000	-	신규
국 비	-	-	100,000	-	△100,000	-	국비
도 비	-	-	-	-	-	-	
시군비	-	-	100,000	-	△10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김 기 윤 (행) 4573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차도 분리 및 감속시설 등 각종 안전시설 보강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사업)
- 예산액 : **1,701,000천원**(2020년 사업비 총액 : 3,402,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 자부담 등을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2020년 국비지원계획 확정에 따른 제2회 추경 반영
- 사업량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3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13개 시·군
- 사업 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설치,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포장,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 설치 등 개선
- 지원 근거 : 도로교통법 제138조의 2(국고보조),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국정 과제

도로교통법 제138조의 2(비용의 지원)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3,402,000천원(국비 1,701,000, 시군비 1,701,000) ○ 보호구역개선 32개소 <table><tr><td>- 천안시 4개소 300,000</td><td>- 금산군 3개소 180,000</td></tr><tr><td>- 공주시 2개소 240,000</td><td>- 부여군 1개소 60,000</td></tr><tr><td>- 보령시 2개소 200,000</td><td>- 서천군 2개소 140,000</td></tr><tr><td>- 아산시 10개소 1,380,000</td><td>- 홍성군 1개소 340,000</td></tr><tr><td>- 서산시 1개소 50,000</td><td>- 예산군 2개소 140,000</td></tr><tr><td>- 논산시 1개소 42,000</td><td>- 태안군 1개소 30,000</td></tr><tr><td>- 당진시 2개소 300,000</td><td></td></tr></table>	- 천안시 4개소 300,000	- 금산군 3개소 180,000	- 공주시 2개소 240,000	- 부여군 1개소 60,000	- 보령시 2개소 200,000	- 서천군 2개소 140,000	- 아산시 10개소 1,380,000	- 홍성군 1개소 340,000	- 서산시 1개소 50,000	- 예산군 2개소 140,000	- 논산시 1개소 42,000	- 태안군 1개소 30,000	- 당진시 2개소 300,000		
- 천안시 4개소 300,000	- 금산군 3개소 180,000															
- 공주시 2개소 240,000	- 부여군 1개소 60,000															
- 보령시 2개소 200,000	- 서천군 2개소 140,000															
- 아산시 10개소 1,380,000	- 홍성군 1개소 340,000															
- 서산시 1개소 50,000	- 예산군 2개소 140,000															
- 논산시 1개소 42,000	- 태안군 1개소 30,000															
- 당진시 2개소 3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402,000	-	1,080,000	3,402,000	2,322,000	-	
국 비	1,701,000	-	540,000	1,701,000	1,161,000	-	균특
도 비	-	-	-	-	-	-	
시군비	1,701,000	-	540,000	1,701,000	1,161,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40,000	1,84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조 경 상 (행) 2843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사고 요인제거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불합리한 교차로 개선으로 교통사고 감소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내 지방도 교차로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90,000천원
 - ※ 증감 사유 : 2020년 국비지원계획 확정에 따른 제2회 추경 반영
- 사 업 량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 홍성지소)
- 사업 내용 : 중앙분리대·전방신호기 설치,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 지원 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제1항,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2017~2021),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국정 과제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 1,090,000천원(국비 545,000, 도비 545,000)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개소 - 논산 강경읍 황산대교 앞 사거리 : 90,000 - 서천 장항항~등기소네거리 : 600,000 - 홍성 김좌진장군상오거리 : 230,000 - 아산 명암리 981번지 교차로 : 17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90,000	-	220,000	1,090,000	870,000	-	
국 비	545,000	-	145,000	545,000	400,000	-	균특
도 비	545,000	-	75,000	545,000	47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8,000	48,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조 경 상 (행) 2843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시군)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보조)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한 대형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소통 원활 도모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지방도로 교차로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700,000천원**(2020년 사업비 총액 : 1,40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2020년 국비지원계획 확정에 따른 제2회 추경 반영
- 사 업 량 : 회전교차로 설치 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계룡시,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 사업 내용 : 회전교차로 설치 5개소
- 지원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제1항,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2017~2021),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국정 과제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1,400,000천원(국비 700,000, 시군비 700,000) ○ 회전교차로 설치 5개소 - 280,000천원 × 5개소 = 1,400,000천원 - 계룡시 1개소, 청양군 1개소, 예산군 1개소, 태안군 2개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400,000	-	700,000	1,400,000	700,000	-	
국 비	700,000	-	350,000	700,000	350,000	-	균특
도 비	-	-	-	-	-	-	
시군비	700,000	-	350,000	700,000	35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80,000	98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조 경 상 (행) 2843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보강·정비를 통한 노인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노인보호구역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150,000천원**(2020년 사업비 총액 : 2,30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2020년 국비지원계획 확정에 따른 제2회 추경 반영
- 사 업 량 : 노인보호구역 개선 39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10개 시·군
- 사업 내용 : 노인보호 도로표지,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최고속도 안전표지, 횡단 보도와 교차로 정비 등
- 지원 근거 : 도로교통법 제138조의 2(국고보조),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국정 과제

도로교통법 제138조의 2(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 사고 발생률이 높은 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2,300,000천원(국비 1,150,000, 시군비 1,150,000) ○ 보호구역개선 39개소 <table><tr><td>- 천안시 2개소 110,000</td><td>- 당진시 9개소 360,000</td></tr><tr><td>- 공주시 2개소 160,000</td><td>- 부여군 2개소 100,000</td></tr><tr><td>- 보령시 3개소 90,000</td><td>- 서천군 2개소 50,000</td></tr><tr><td>- 아산시 5개소 500,000</td><td>- 홍성군 2개소 140,000</td></tr><tr><td>- 서산시 3개소 140,000</td><td>- 예산군 9개소 650,000</td></tr></table>	- 천안시 2개소 110,000	- 당진시 9개소 360,000	- 공주시 2개소 160,000	- 부여군 2개소 100,000	- 보령시 3개소 90,000	- 서천군 2개소 50,000	- 아산시 5개소 500,000	- 홍성군 2개소 140,000	- 서산시 3개소 140,000	- 예산군 9개소 650,000	
- 천안시 2개소 110,000	- 당진시 9개소 360,000											
- 공주시 2개소 160,000	- 부여군 2개소 100,000											
- 보령시 3개소 90,000	- 서천군 2개소 50,000											
- 아산시 5개소 500,000	- 홍성군 2개소 140,000											
- 서산시 3개소 140,000	- 예산군 9개소 6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300,000	-	1,150,000	2,300,000	1,150,000	-	
국 비	1,150,000	-	575,000	1,150,000	575,000	-	균특
도 비	-	-	-	-	-	-	
시군비	1,150,000	-	575,000	1,150,000	575,000	-	
기 타	-	-	-	-		-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0,000	45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조 경 상 (행) 2843

이동식 과속단속부스 설치(도)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교통안전사업 추진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방도 내 이동식 단속부스 설치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내 지방도
- 사업 기간 : 2020. 5 ~ 12월(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120,000천원
※ 증감 사유 : 사망자 비중이 많은 지방관리도로 내 차량 제한속도 감소 추진
- 사 업 량 : 이동식 과속단속부스 2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시소
- 사업 내용 : 지방도 내 이동식 과속단속부스 설치
- 지원 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이동식 과속단속부스 설치 : 120,000천원(전액 소방안전교부세) ○ 6,000천원 × 20개소 = 120,000천원 － 천안 4개소, 공주 6개소, 금산 2개소, 부여 4개소, 청양 3개소, 서천 1개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20,000	-	-	120,000	120,000	-	신규
국 비	120,000	-	-	120,000	120,000	-	소방안전교부세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소방안전교부세)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조 경 상 (행) 2843

이동식 과속단속부스 설치(시군)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교통안전사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시·군 내 이동식 단속부스 설치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5 ~ 12월(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9,000천원**(2020년 사업비 총액 : 3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사망자 비중이 많은 지방관리도로 내 차량 제한속도 감소 추진
- 사 업 량 : 이동식 과속단속부스 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 사업 내용 : 시군관리도로 내 이동식 과속단속부스 설치
- 지원 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이동식 과속단속부스 설치 : 30,000천원(소방안전교부세 9,000, 시군비 21,000) ○ 6,000천원 × 5개소 = 30,000천원 - 천안 1개소, 공주 1개소, 보령 1개소, 아산 1개소, 논산 1개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	-	30,000	30,000	-	신규
국 비	9,000	-	-	9,000	9,000	-	소방안전교부세
도 비	-	-	-	-	-	-	
시군비	21,000	-	-	21,000	21,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소방안전교부세)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당없음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조 경 상 (행) 2843

ITS 구축 사업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ITS 구축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정보·교통사고 수집, 가공을 통해 도로전광판 및 인터넷, 앱 등으로 교통정보 연계 제공 등 편리한 지능형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2,220,000천원** (2020년 사업비 총액 : 3,70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19.12.16.)에 따라 '20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함
- 사업 량 : 9개소 54.2km 구간(국도 23, 32, 40 외 시내부 주요간선도로 및 교차로 등)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업 내용 : CCTV, 교통정보 수집장치, 교차로 감시카메라, 영상검지기, 신호시스템 설치 및 개선 등
- 지원 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0조 3항 및 5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0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자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분석·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지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권역교통정보센터 또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정보의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ITS 구축 사업 : 3,700,000천원(국비 2,220,000, 시군비 1,480,000) ○ 현장시스템 구축 : 2,571,000천원 · 신호 전자제어기(온라인제어 포함) 9,200,000원(단가) x 30식(수량) = 276,000천원 · 스마트교차로 영상장비 15,000,000원(단가) x 10식(수량) = 150,000천원 · 주차정보시스템 100,000,000원(단가) x 6식(수량) = 600,000천원 · CCTV 50,000,000원(단가) x 11대(수량) = 550,000천원 · 교차로감시카메라 15,000,000원(단가) x 9대(수량) = 135,000천원 · 영상검지기(VDS) 20,000,000원(단가) x 10대(수량) = 200,000천원 · 교통정보제공(VMS) 82,500,000원(단가) x 8대(수량) = 660,000천원 ○ 센터시스템 구축 : 829,000천원 · H/W 270,000,000원(단가) x 1식(수량) + S/W 250,000,000원(단가) x 1식 = 520,000천원 · 기타(TOD분석 및 최적화, 상황판시스템 309,000,000원(단가) x 1식(수량) = 309,000천원 ○ 기타 부대비 : 3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700,000	-	-	3,700,000	3,700,000	-	신규
국 비	2,220,000	-	-	2,220,000	2,220,000	-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1,480,000	-	-	1,480,000	1,48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60%, 시군비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김 기 윤 (행) 4573

감응신호 구축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감응신호 구축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감응신호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 등 지능형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태안군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계속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540,000천원** (2020년 사업비 총액 : 90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19.12.16.)에 따라 '20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함
- 사 업 량 : 공주시 2.5km 구간, 태안군 11km 구간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태안군
- 사업 내용 : 감응 신호제어기, 보행자 작동신호기, 센터시스템 H/W, S/W 등 구축·설치
- 지원 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0조 3항 및 5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0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자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분석·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지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권역교통정보센터 또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정보의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감응신호 구축 사업 : 900,000천원(국비 540,000, 시군비 360,000) ○ 감응신호 구축 사업(공주시) : 300,000천원 · 신호제어기(보행자작동신호 포함) 35,000,000원(단가) x 5개(수량) = 175,000천원 · 센터시스템 H/W(S/W 포함) 75,000,000원(단가) x 1식(수량) = 75,000천원 · 기타부대비(사업관리비 등) = 50,000천원 ○ 감응신호 구축 사업(태안군) : 600,000천원 · 신호제어기(통신모뎀 포함) 20,000,000원(단가) x 12개(수량) = 240,000천원 · 보행자작동신호기(홍보전광판 포함) 15,000,000원(단가) x 20개(수량) = 300,000천원 · 기타부대비(사업관리비 등) = 6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00,000	-	-	900,000	900,000	-	신규
국 비	540,000	-	-	540,000	540,000	-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360,000	-	-	360,000	36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60%, 시군비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김 기 윤 (행) 4573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6,900,600천원**(2020년 사업비 총액 : 12,866,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 총액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2020년 국비지원계획 확정에 따른 제2회 추경 반영
- 사 업 량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228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
- 지원 근거 : 도로교통법 제138조의 2(국고보조),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국정 과제

도로교통법 제138조의 2(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 사고 발생률이 높은 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 12,866,000천원(국비 5,965,400, 시군비 5,965,400, 교육부 부담금 935,200) ○ 과속카메라 및 신호기 228개소 - 천안시 42개소 2,286,000 - 공주시 14개소 772,000 - 보령시 12개소 772,000 - 아산시 41개소 2,745,000 - 서산시 12개소 837,000 - 논산시 15개소 837,000 - 계룡시 2개소 130,000 - 당진시 15개소 837,000 - 금산군 8개소 451,000 - 부여군 11개소 623,000 - 서천군 8개소 451,000 - 청양군 7개소 386,000 - 홍성군 16개소 558,000 - 예산군 15개소 623,000 - 태안군 10개소 558,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2,866,000	-	1,800,000	12,866,000	11,066,000	-	
국 비	5,965,400	-	900,000	5,965,400	5,065,400	-	균특
도 비	-	-	-	-	-	-	
시군비	5,965,400	-	900,000	5,965,400	5,065,400	-	
부담금	935,200	-	-	935,200	935,200	-	교육부

* 보조율 : 국비 46.4%, 시군비 46.4%, 교육부 부담금 7.2%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조 경 상 (행) 2843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철도항공과

1. 청양~신양IC 국지도 건설	142
2. 청양~신양IC 국지도 건설(보상비)	144
3. 이호~양곡 국지도 건설	146
4. 이호~양곡 도로건설공사(보상비)	148
5.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	150
6.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보상비)	152
7. 농어촌도로 확포장	154
8. 위험도로 구조개선	158
9. 지방도 점용료 징수교부금	160
10. 소송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162
11.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164
12. 지방도로 정비 우수시군 지원금	166
13. 반계도로 오르막차로 설치공사(지방도634호) ·	168
14. 자살위험 교량 생명의 문구 설치(도) ·	170
15. 지방도 인도설치공사	172

16. 지방도645호 광금도로 선형개량공사 ..	176
17. 지방도610호 도로선형개량공사	178
18. 국지도96호 용신도로 선형개량공사	180
19. 지방도609호 운월도로 선형개량공사 ..	182
20. 한성도로 배수로 정비공사(지방도617호) ·	184
21. 국지도68호 천내도로 선형개량공사	186
22. 지방도616호 강장도로 교차로 개선공사 ...	188
23. 국지도96호 용천도로 교차로 개선공사 ..	190
24. 지방도606호 용마도로 갓길정비공사 ..	192
25. 국지도70호 음암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194
26. 자살위험 교량 생명의 문구 설치(시군) ..	196
27. 지방도617호 판교상좌 선형개량공사 ..	198
28. 예꽃재마을 진입교차로 개선공사	200
29. 지방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202
30. 서산~부석(지방도649호) 확포장	204
31. 대술~정안(지방도618호) 확포장	206
32. 국방대진입도로(지방도697호) 확포장	208

33. 어천~공주(4차)(지방도625호) 확포장	210
34. 규암~청남(지방도625호) 확포장	212
35. 기지시~한진(지방도619호) 확포장	214
36. 밀두~대음(지방도623호) 확포장사업 ..	216
37. 오천우회도로(지방도610호) 확포장	218
38. 삭선~원북(지방도603호) 확포장	220
39. 산동~상덕(지방도624호) 확포장	222
40.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	224
41. 철도역 설치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 지원(성립전) ·	226
42. 가야곡~양촌 국지도건설 집행잔액 및 이자 ..	228

청양~신양IC 국지도 건설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세부사업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청양~신양IC)
	통 계 목	시설비 및 부대비 등 (401-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사고 예방 및 신양IC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청양군과 세종시·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상생발전 기틀 마련
- 사업 위치 :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 예산군 신양면 만사리(국지도70호)
- 사업 기간 : 2017. ~ 2023.(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비 : 52,714,000천원
- 예산액 : **1,543,000천원**
※ 증감 사유 : '20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비율 반영
- 사업량 : 2차로 확장 L=16.2km, B=10.0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도(70호선/청양~신양IC) 건설 [연장 16.2km, 폭 2차로(10.0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85조,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도로법」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85조(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③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공사비(국비 70%, 지방비 30%). 보상비(지방비 10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청양~신양 국지도 건설 : 1,543,000천원(국비 1,080,000, 도비 463,000) ○ 시설비 : 1,233,000천원 ○ 감리비 : 300,000천원 ○ 부대비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2,714,000	30,350,143	2,860,000	1,543,000	-1,317,000	20,820,857	계속
국 비	30,115,100	23,540,000	2,002,000	1,080,000	-922,000	5,495,100	
도 비	22,598,900	6,810,143	858,000	463,000	-395,000	15,325,757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3,898,341	15,163,374	8,734,967	63.45%	8,734,967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김택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정성식 (행) 2831

청양~신양IC 국지도 건설(보상비)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세부사업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청양~신양C)(보상비)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사고 예방 및 신양IC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청양군과 세종시·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상생발전 기틀 마련
- 사업 위치 :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 예산군 신양면 만사리(국지도70호)
- 사업 기간 : 2017. ~ 2023.(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비 : 52,714,000천원
- 예산액 : 3,726,000천원
- ※ 증감 사유
 - 2019년 3회 추경 시 2구간 보상가액 수용 불가에 따른 협의 보상 추진 지난으로 보상비 감액하였으나, 2019.12월 수용재결 신청하여 2020.6월 공탁금 집행 예정에 따른 증액
 - 코로나19 대응 관련 도비 재원부족으로 기 확보 예산 대체(도비→지역개발기금 3,726,000천원)
- 사업량 : 2차로 확장 L=16.2km, B=10.0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지도(70호선/청양~신양IC) 건설 [연장 16.2km, 폭 2차로(10.0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85조,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도로법」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85조(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③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공사비(국비 70%, 지방비 30%). 보상비(지방비 10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청양~신양C 국지도 건설(보상비) : 3,726,000천원(전액 부담금) ○ 보상비 3,726,000천원 ※ 2019년 3회 추경 시 감액한 보상비 반영(증 2,256,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2,714,000	30,350,143	1,470,000	3,726,000	2,256,000	18,637,857	계속
국 비	30,115,100	23,540,000	-	-	-	6,575,100	
도 비	18,872,900	6,810,143	1,470,000	-	-1,470,000	12,062,757	
시군비	-	-	-	-	-	-	
부담금	3,726,000	-	-	3,726,000	3,726,000	-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3,898,341	15,163,374	8,734,967	63.45%	8,734,967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김택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정성식 (행) 2831

이호~양곡 국지도 건설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세부사업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이호-양곡)
	통 계 목	시설비 등 (401-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청 신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간 교통불편 해소를 통한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 판교리(국지도96호)
- 사업 기간 : 2016 ~ 2020(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비 : 22,946,505천원
- 예산액 : 1,177,142천원
- ※ 증감 사유 : “20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비율 반영
- 사업량 : L=4.845km, B=10.0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지도(96호선/이호~양곡) 건설 [연장 4.71km, 폭 2차로(10.0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85조,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도로법」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85조(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③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공사비(국비 70%, 지방비 30%). 보상비(지방비 10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이호~양곡 국지도 건설 : 1,177,142천원(균특 824,000, 도비 353,142) ○ 시설비 : 997,142천원 ○ 감리비 : 2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2,946,505	18,310,363	2,857,000	1,177,142	-1,679,858	3,459,000	계속
국 비	13,015,705	9,770,505	1,999,900	824,000	-1,175,900	2,421,200	균특
도 비	9,930,800	8,539,858	857,100	353,142	-503,958	1,037,800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공사비(국비 70%, 도비 30%) / 보상비(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1,781,807	6,191,853	5,589,954	52%	5,589,95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김택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정성식 (행) 2831

이호~양곡 도로건설공사(보상비)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세부사업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이호~양곡)(보상비)
	통 계 목	시설비 등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청 신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접근성 향상
 - 지역간 교통불편 해소를 통한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 판교리
- 사업 기간 : 2016 ~ 2020
- 총 사업비 : 22,946,505천원
- 예산액 : 697,000천원
 - ※ 증감 사유 :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비 추가 필요
- 사업량 : L=4.845km, B=10.0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지도(96호선/이호~양곡) 건설 [연장 4.71km, 폭 2차로(10.0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85조,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도로법」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85조(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③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공사비(국비 70%, 지방비 30%). 보상비(지방비 10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이호~양곡 국지도 건설 : 697,000천원(전액 도비) ○ 보상비 : 697,000천원 ※ 편입토지 추가 보상에 따른 보상비 증액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2,946,505	18,310,363	0	697,000	697,000	3,939,142	계속
국 비	13,015,705	9,770,505	-	-	-	3,245,200	
도 비	9,930,800	8,539,858	-	697,000	697,000	693,942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공사비(국비 70%, 도비 30%) / 보상비(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384,642	3,284,422	100,220	97%	100,22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2023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김택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정성식 (행) 2831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세부사업	국가지원지방도건설 (당진~서산)
	통 계 목	시설비 등 (401-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지도70호선 내 도로망 미연계(Missing Link)에 따른 교통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석문국가산업단지 물동량이 중부권으로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국지도70호)
- 사업 기간 : 2017. ~ 2027.(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비 : 175,500,000천원
- 예산액 : 6,846,300천원
- ※ 증감 사유 : '20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비율 반영
- 사업량 : L=19.1km, B=17.5m(4차로 확장 및 신설)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지도70호 확·포장공사 (L=19.1km, B=17.5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85조,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도로법」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85조(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③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공사비(국비 70%, 지방비 30%). 보상비(지방비 10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 : 6,846,300천원(균특 4,792,000, 도비 2,054,300) ○ 시설비 : 6,417,000천원 ○ 감리비 : 415,000천원 ○ 부대비 : 14,3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75,500,000	59,920,430	13,857,000	6,846,300	-7,010,700	108,733,270	계속
국 비	78,000,900	19,921,000	9,700,000	4,792,000	-4,908,000	53,287,900	균특
도 비	97,499,100	39,999,430	4,157,000	2,054,300	-2,102,700	55,445,370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공사비(국비 70%, 도비 30%). 보상비(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5,733,270	47,622,792	8,110,478	85.4%	8,110,47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김택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정성식 (행) 2831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보상비)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세부사업	국가지원지방도건설 (당진~서산)(보상비)
	통 계 목	시설비 등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지도70호선 내 도로망 미연계(Missing Link)에 따른 교통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석문국가산업단지 물동량이 중부권으로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국지도70호)
- 사업 기간 : 2017. ~ 2027.(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비 : 175,500,000천원
- 예산액 : 24,228,00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대응 관련 도비 재원부족으로 기 확보 예산 대체(도비→지역개발기금 4,000,000천원)
- 사업량 : L=19.1km, B=17.5m(4차로 확장 및 신설)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지도70호 확·포장공사 (L=19.1km, B=17.5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85조, 제4차 국토·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도로법」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85조(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③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공사비(국비 70%, 지방비 30%). 보상비(지방비 10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보상비) : 24,228,000천원(도비 228,000, 부담금 24,000,000) ○ 보상비 : 24,228,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75,500,000	59,920,430	24,228,000	24,228,000	-	91,351,570	계속
국 비	78,000,900	19,921,000	-	-	-	58,079,900	
도 비	73,499,100	39,999,430	4,228,000	228,000	-4,000,000	33,271,670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부담금	24,000,000	-	20,000,000	24,000,000	4,000,000	-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공사비(국비 70%, 도비 30%). 보상비(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5,733,270	47,622,792	8,110,478	85.4%	8,110,47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김택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정성식 (행) 2831

농어촌도로 확포장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계획 및 확충
	세부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등 정비사업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어촌도로정비 등 지역사업 시행을 위해 도비 재정지원으로 지역주민 통행 불편 등 민원 해소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4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 ~ 2020. 12.(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15,144,500천원** (2020년 사업비 : 30,289,000천원)
- ※ 증감 사유 : 농어촌도로정비 등 지역사업 시행을 통한 지역주민 통행불편 해소
- 사 업 량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3지구(본예산 55지구, 2회 추경 8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4개 시·군
- 사업 내용 : 농어촌도로 등 확포장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어촌도로 확포장 : 30,289,000천원(도비 15,144,500, 시군비 15,144,500) <천안시> 1,540,000천원 ○ 리도212호(송왕선) 확포장공사(800,000천원) ○ 대해교 진출입로 확포장공사(100,000천원) ○ 시도11호(광덕사~시계) 확포장공사(500,000천원) ○ 리도208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140,000천원) <공주시> 4,200,000천원 ○ 복합연수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2,000,000천원) * 2회 추경(1,000,000천원) ○ 시도12호(공주IC~목천교차로) 확포장공사(1,000,000천원) ○ 상왕도로(시도5호) 확포장공사(500,000천원) ○ 시도38호(산정~조평) 확포장공사(500,000천원) ○ 선학리 진입교량 개선사업(200,000천원)	도비분 (도비50% 시군비50%)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보령시> 2,549,000천원 ○ 천북 시도10호(하만~신죽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1,000,000천원) ○ 남포면 리도201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100,000천원) ○ 남포면 리도202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100,000천원) ○ 청소206호(진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500,000천원) ○ 청소209호(진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500,000천원) ○ 진죽3리(농어촌도로201호) 확포장공사(29,000천원) ○ 봉덕리 농도(207호) 진입로 개선공사(120,000천원) * 2회 추경(120,000천원) ○ 주산면 동오리 데크시설 설치공사(200,000천원) <아산시> 3,360,000천원 ○ 농어촌도로(가내~궁화) 확포장공사(700,000천원) ○ 농어촌도로209호(구령리) 확포장공사(800,000천원) ○ 시도11호(남성리) 확포장공사(700,000천원) ○ 농어촌도로(기곡~신통) 확포장공사(700,000천원) ○ 시도3호(유원대학교 일원) 보도설치공사(400,000천원) ○ 휴대1리 농어촌도로102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60,000천원) <서산시> 1,000,000천원 ○ 농어촌도로 노견포장공사(500,000천원) ○ 차성선(2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500,000천원) <논산시> 3,600,000천원 ○ 채운 리도206호 확포장공사(700,000천원) ○ 양촌 리도212호 확포장공사(700,000천원) ○ 연무 리도203호 확포장공사(600,000천원) ○ 시도2호(신교~외성) 확포장공사(1,100,000천원) * 2회 추경(600,000천원) ○ 시도7호(탐정~종연) 교량 설치공사(500,000천원) <당진시> 200,000천원 ○ 대호지305호(조적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200,000천원) <금산군> 200,000천원 ○ 군도7호 지방교 재가설공사(200,000천원) <부여군> 2,340,000천원 ○ 군도4호선(안서~가덕) 도로확포장공사(400,000천원) ○ 군도2호선(전장~화성) 도로확포장공사(500,000천원) ○ 농어촌도로204호 교량재가설(600,000천원) ○ 군도14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340,000천원) ○ 임천면 리도202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500,000천원) * 2회 추경(500,000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서천군> 1,720,000천원 ○ 군도4호선 내 보도설치공사(120,000천원) ○ 기산 농어촌도로 203호(기산 월기)도로 확포장공사(600,000천원) ○ 군도6호선(신포~하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300,000천원) ○ 시초 농어촌도로304호(신곡~태성) 도로 확포장공사(100,000천원) ○ 종천 리도207호 확포장공사(400,000천원) ○ 종천 리도204호 확포장공사(200,000천원)	
	<청양군> 2,300,000천원 ○ 농어촌도로204호 확포장공사(500,000천원) ○ 농어촌도로102호 확포장공사(600,000천원) ○ 군도11호 계양교 보수·보강공사(200,000천원) ○ 장평면 죽림교량 재가설공사(1,000,000천원)	
	<홍성군> 1,330,000천원 ○ 서부 농어촌도로209호 확포장공사(700,000천원) ○ 국지도96호 보도 및 배수로 설치공사(600,000천원) ○ 홍동 상하금 아스콘 포장(6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0,289,000	-	27,339,000	30,289,000	2,95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15,144,500	-	13,669,500	15,144,500	1,475,000	-	
시군비	15,144,500	-	13,669,500	15,144,500	1,475,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김택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강성민 (행) 2831

위험도로 구조개선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통 계 목	시설비및부대비 (401-01,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사고 요인 제거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01 ~ 2020. 12.(단년도 사업)
- 총 사업비 : 273,736,000천원
- 예산액 : **5,236,000천원** (2020년 사업비 : 5,936,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는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국비 편성 변경(감액)에 따른 도비 감액
- 사업량 : 선형개량 등 8개소(지방도 5개소, 국지도 1개소, 시도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공주시, 아산시
- 사업 내용 : 지방도로 선형개량 및 위험도로 개선
- 지원 근거 :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국정과제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 5,936,000천원(국특 4,224,000, 도비 1,012,000, 시군비 700,000) ○ 시설비 : 5,923,000천원 - 선형개량(지방도, 국지도, 시도) 8개소 · 우공도로 선형개량(지799호) = 1,435,000천원 · 주향도로 선형개량(지607호) = 612,000천원 · 양전도로 선형개량(국지68호) = 584,000천원 · 석막도로 선형개량(지635호) = 597,000천원 · 천을도로 선형개량(지601호) = 598,000천원 · 관리도로 선형개량(지603호) = 697,000천원 · 유구도로 선형개량(면도102호) = 1,000,000천원 · 신창도로 선형개량(시도21호) = 400,000천원 ○ 시설부대비 : 13,000천원 · 선형개량 6개소(지방도, 국지도) : 13,000천원 - 시설부대비 : (6개소 x 2백만원) + (1개소 x 1백만원) = 13,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73,736,000	180,376,000	7,388,000	5,936,000	-1,452,000	87,424,000	계속
국 비	136,868,000	90,188,000	4,000,000	4,224,000	224,000	42,456,000	균특, 성립전(700,000)
도 비	76,848,000	55,793,000	3,188,000	1,012,000	-2,176,000	20,043,000	
시군비	60,020,000	34,395,000	200,000	700,000	500,000	24,925,000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356,787	5,029,522	3,327,265	60.2%	3,327,26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김택중 (행) 2830	이재원 (행) 4681	이중원 (행) 4682

지방도 점용료 징수교부금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점용료 징수교부금
	통 계 목	징수교부금 (308-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지도 및 지방도 상 도로점용료 징수업무 시·군 위임사무로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제9조(세입 및 징수교부금)에 따라 점용료 징수 금액의 50%를 시·군에 교부토록 규정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4개 시·군 지방도(계룡시 제외: 지방도 없음)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00,00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점용료 징수금 감액 예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2020년도 도로점용료 25% 감액 추진(국토부 시행))
- 사 업 량 : 지방도 점용료 징수금의 50%
- 사업시행방법 : 시군교부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방도 점용료 징수금액의 50% 시군 교부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제9조(점용료 등의 수입 처리)

- ①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가 징수한 점용료·변상금·과태료는 충청남도의 수입으로 한다.
-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하여 납부한 제1항의 수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한다.
 1. 점용료 징수금액의 경우 100분의 5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도 점용료 징수교부금 : 400,000천원(전액 도비) ○ 800백만원 × 50% = 4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00,000	-	600,000	400,000	-200,000	-	
국 비	-	-	-	-	-	-	
도 비	400,000	-	600,000	400,000	-20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60,000	405,851	54,149	88.2%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김택중 (행) 2830	이재원 (행) 4681	이현주 (행) 2833

소송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통 계 목	배상금 등 (3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방도 미지급용지 중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 사업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리 산13-1, 산13-3
- 사업 기간 : 2020.5. ~ 6.(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5,900천원
- ※ 증감 사유 :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2019가소1527)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 사 업 량 : 소송비용 지급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 지원 근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카합99 소송비용액 결정(대전지법 천안지원 가소1527 관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

- 사 건 : 2019카합99 소송비용액확정
- 주 문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소1527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047,530원임을 확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 5,900천원(전액 도비) ○ 소송비용 1식 : 4,100천원 ○ 토지임료 지급 1식 : 1,8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900	-	1,800	5,900	4,1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5,900	-	1,800	5,900	4,1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김택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양길태 (행) 4674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방도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중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 실시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4개 시·군(계룡시 제외)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500,000천원
- ※ 증감 사유
 - 미지급용지 보상금 및 부당이득금 소송 발생에 따른 예산 증액
 - 코로나19 대응 관련 도비 재원부족으로 기 확보 예산 대체(도비→재정안정화금 2,500,000천원)
- 사 업 량 : 천안시 등 14개(계룡시 제외) 시·군 국지도 및 지방도 미보상 용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 지원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①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용지의 평가를 의뢰하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평가위원회에 미지급용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 2,500,000천원(전액 부담금) ○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2,000,000) * 1식 = 2,000,000천원 ○ 부당이득금 소송 제기에 따른 보상(500,000) * 1식 = 5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500,000	-	1,000,000	2,500,000	1,500,00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	-	1,000,000	-	-1,000,000	-	
시군비	-	-	-	-	-	-	
부담금	2,500,000	-	-	2,500,000	2,500,000	-	재정안정화기금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191,141	2,022,440	168,701	92.3%	147,185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김택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성동영 (행) 4672

지방도로 정비 우수시군 지원금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 관리
	통 계 목	포상금 (3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군 도로관리 업무 담당자의 사기진작 및 적극성 유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단년도 사업)
- 총 사업비 : 420,000천원
- 예산액 : 0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대응 관련 도비 재원부족으로 기정액 삭감
- 사업량 : 15개 시·군 중 도로관리 우수 시·군(도로관리분야, 도로정비분야)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도로관리 우수 시·군 포상금 지원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해당없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40,000	-	140,000	-	-140,000	-	
국 비	-	-	-	-	-	-	
도 비	140,000	-	140,000	-	-14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0	382,745	117,255	76.5%	115,75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9년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김택중 (행) 2830	이재원 (행) 4681	이현주 (행) 2833

반계도로 오르막차로 설치공사(지방도634호)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 관리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방도634호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일원의 오르막차로 신설을 통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및 운전자의 안전 도모
- 사업 위치 :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일원(지방도634호)
- 사업 기간 : 2017. 1. ~ 2021. 12.(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비 : 9,783,000천원
- 예산액 : **0원**
 - ※ 증감 사유 : 한국서부발전과 사업비 부담 협의 이후로 공사 발주 시기 조정(20년 →21년 이후)에 따른 사업비 감액
- 사업량 : 선형개량 L=1.25km, B=8.5~17.0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방도 634호 오르막차로 신설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제공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1항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해당없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783,000	663,000	500,000	-	-500,000	9,120,000	
국 비	-	-	-	-	-	-	
도 비	9,783,000	663,000	500,000	-	-500,000	9,120,000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0	382,745	117,255	76.5%	115,75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9년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김택중 (행) 2830	이재원 (행) 4681	이현주 (행) 2833

자살위험 교량 생명의 문구 설치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교량에 생명의 소중함, 희망 등의 내용 담은 문구 설치로 자살 예방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아산시, 논산시)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원
 - ※ 증감 사유 : 사업의 실효성이 없으며, 역효과 유발 우려(서울 마포대교 문구 전부 제거)
- 사 업 량 : 3개교(황산대교, 선인교, 선우대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도내 교량에 생명의 소중함, 희망 등 내용 담은 문구 설치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1항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해당없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	-	20,000	-	-20,000	-	
국 비	-	-	-	-	-	-	
도 비	-	-	20,000	-	-2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김택중 (행) 2830	이재원 (행) 4681	이현주 (행) 2833

지방도 인도설치공사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방도 상 인도 미설치 구간 보행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인도설치를 통한 보행자의 안전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500,000천원
- ※ 증감 사유
 - 인도 미설치 구간 인도 설치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 도모
 - 코로나19 대응 관련 도비 재원부족으로 기 확보 예산 대체(도비→지역개발기금 4,500,000천원)
- 사업 량 : 인도설치 19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인도 미설치 구간 인도 설치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 도모
- 지원 근거 : 도로법 54조 1항

도로법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도 인도설치공사 : 4,500,000천원(전액 부담금) <천안시> 400,000천원 ○ 국지도 70호 인도정비공사 200,000천원 ○ 국지도 70호 석곡도로 인도설치공사 200,000천원 <보령시> 500,000천원 ○ 지방도606호 대천도로 인도설치공사 200,000천원 ○ 지방도610호 성연도로 인도설치공사 300,000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아산시> 400,000천원 ○ 지방도623호 선창도로 인도설치공사 300,000천원 ○ 지방도623호 금곡초교 인도설치공사 100,000천원 * 추가 <서산시> 350,000천원 ○ 지방도647호 용장도로 인도설치공사 200,000천원 ○ 지방도634호 고남도로 인도설치공사 150,000천원 <논산시> 500,000천원 ○ 국지도 98호 육곡도로 인도설치공사 500,000천원 <당진시> 150,000천원 ○ 지방도615호 삼봉초도로 인도설치공사 150,000천원 <금산군> 300,000천원 ○ 지방도 635호 흑암도로 인도설치공사 200,000천원 ○ 국지도 68호 천내도로 인도설치공사 100,000천원 <부여군> 500,000천원 ○ 지방도 799호 현내도로 인도설치공사 500,000천원 <청양군> 100,000천원 ○ 국지도 96호 중목도로 인도설치공사 100,000천원 <홍성군> 310,000천원 ○ 지방도616호 덕정도로 인도설치공사 100,000천원 ○ 지방도616호 죽림도로 인도설치공사 210,000천원 <예산군> 840,000천원 ○ 지방도609호 봉림도로 인도설치공사 300,000천원 ○ 지방도618호 신원도로 인도설치공사 540,000천원 <태안군> 150,000천원 ○ 지방도634호 방갈도로 인도설치공사 1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500,000	-	4,400,000	4,500,000	100,00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	-	4,400,000	-	-4,40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부담금	4,500,000	-	-	4,500,000	4,500,000	-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김택중 (행) 2830	이재원 (행) 4681	이현주 (행) 2833



지방도645호 광금도로 선형개량공사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 관리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방도 645호 선형 불량 구간의 도로 시설기준 확보로 교통사고예방 및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함
- 사업 위치 : 청양군 대치면 광금리 일원(지방도645호)
- 사업 기간 : 2017. 10. ~ 2021. 12.(다년도 사업)
- 총 사업비 : 2,690,000천원
- 예산액 : 500,000천원
- ※ 증감 사유 : 관계기관(금강유역환경청 등) 협의완료에 따른 사업추진비 필요
- 사업량 : 선형개량 L=0.58km, B=12.75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방도645호 선형개량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제공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1항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광금도로 선형개량공사 : 500,000천원(전액 도비) ○ 보상비 : 160,000천원 ○ 폐기물처리비 : 180,000천원 ○ 관급자재비 : 16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690,000	550,000	-	500,000	500,000	1,640,000	
국 비	-	-	-	-	-	-	
도 비	2,690,000	550,000	-	500,000	500,000	1,640,000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0	178,353	321,647	35.7%	321,647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김택중 (행) 2830	이재원 (행) 4681	이현주 (행) 2833

지방도610호 도로선형개량공사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 관리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방도610호 도로 선형 불량에 따라 지방도 격에 맞는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사고발생 저감 및 주행환경 개선
- 사업 위치 :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747-2번지 일원(지방도610호)
- 사업 기간 : 2019. 3. ~ 2020. 12.(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비 : 695,982천원
- 예산액 : **670,000천원**
- ※ 증감 사유 : 행정절차 이행 완료에 따른 사업추진비(공사비) 필요
- 사업량 : 선형개량 L=0.15k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1식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도 610호 도로선형개량 : 670,000천원(전액 도비) ○ 공사비 : 67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695,982	25,982	-	670,000	670,000	-	
국 비	-	-	-	-	-	-	
도 비	695,982	25,982	-	670,000	67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0,000	25,982	4,018	86.6%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김택중 (행) 2830	이재원 (행) 4681	이현주 (행) 2833

국지도96호 용신도로 선형개량공사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지도96호 도로 선형 불량에 따라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사고발생 저감 및 주행환경 개선
- 사업 위치 :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산88-1 일원
- 사업 기간 : 2020. 05. ~ 2021. 12.(다년도사업, 신규사업)
- 총 사업비 : 35,000천원 *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미정
- 예산액 : 35,000천원
- ※ 증감 사유 :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사고발생 저감 및 주행환경 개선
- 사업량 : 선형개량 L=0.5k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도로 선형개량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 제공
- 지원근거 : 「도로법」 제31조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지도96호 용신도로 선형개량공사 : 35,000천원(전액 도비) ○ 설계비 : 3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5,000	-	-	35,000	35,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35,000	-	-	35,000	35,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김택중 (행) 2830	이재원 (행) 4681	이현주 (행) 2833

지방도609호 운월도로 선형개량공사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방도609호 도로 선형 불량에 따라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사고발생 저감 및 주행환경 개선
- 사업 위치 :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일원
- 사업 기간 : 2020. 05. ~ 2023. 12.(다년도사업, 신규사업)
- 총 사업비 : 120,000천원 *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미정
- 예산액 : 120,000천원
- ※ 증감 사유 :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사고발생 저감 및 주행환경 개선
- 사업량 : 선형개량 L=0.5k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도로 선형개량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 제공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1항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도609호 운월도로 선형개량공사 : 120,000천원(전액 도비) ○ 설계비 : 1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20,000	-	-	120,000	12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120,000	-	-	120,000	12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김택중 (행) 2830	이재원 (행) 4681	이현주 (행) 2833

한성도로 배수로 정비공사(지방도617호)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방도617호 서천군 마서면 한성리 일원 배수로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 위치 : 서천군 마서면 한성리 669-16번지 일원
- 사업 기간 : 2020. 05. ~ 2020. 8.(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
- ※ 증감 사유 : 배수로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사 업 량 : 배수로정비 L=194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배수로정비를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제공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1항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한성도로 배수로 정비공사(지방도617호) : 100,000천원(전액 도비) ○ 공사비 : 100,000천원 * 설계 기 시행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	-	100,000	10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100,000	-	-	100,000	10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김택중 (행) 2830	이재원 (행) 4681	이현주 (행) 2833

국지도68호 천내도로 선형개량공사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방도 상 도로 선형개량사업 시행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민 인명피해 방지
- 사업 위치 :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일원(국지도 68호)
- 사업 기간 : 2018.11. ~ 2020.05.(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비 : 1,084,000천원
- 예산액 : 120,000천원
※ 증감 사유 : 손실보상비용, 공사비 등 부족으로 추가예산 확보 필요
- 사업량 : 선형개량 L=0.24km, B=9.5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도로 선형개량
- 지원 근거 : 「도로법」 31조 1항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천내도로 선형개량사업 : 120,000천원(전액 도비) ○ 보상비 : 110,000천원 · 토지(1필지), 지장물(1개) ○ 공사비(잔여분) 및 재감정평가 등 수수료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84,000	964,000	-	120,000	120,000	-	
국 비	-	-	-	-	-	-	
도 비	1,084,000	964,000	-	120,000	12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40,000	64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김택중 (행) 2830	이재원 (행) 4681	이현주 (행) 2833

지방도616호 강장도로 교차로 개선공사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방도616호 상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 일원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
- 사업 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 8-3번지 일원
- 사업 기간 : 2020. 06. ~ 2020. 12.(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
- ※ 증감 사유 :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
- 사 업 량 : 교차로개선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교차로 개선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1항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도616호 강장도로 교차로 개선공사 : 100,000천원(전액 도비) ○ 설계비 : 10,000천원 ○ 공사비 : 9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	-	100,000	10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100,000	-	-	100,000	10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김택중 (행) 2830	이재원 (행) 4681	이현주 (행) 2833

국지도96호 용천도로 교차로 개선공사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지도96호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 일원의 도로 개선으로 원활한 차량소통 및 운전자의 안전 도모
- 사업 위치 :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 일원
- 사업 기간 : 2020. 05. ~ 2020. 12. (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총 사업비 : 20,000천원 *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미정
- 예산액 : **20,000천원** (2020년 사업비 : 20,000천원)
- ※ 증감 사유 : 도로 개선으로 원활한 차량소통 및 운전자의 안전 도모
- 사업량 : 교차로개선(변속차로, 좌회전차로, 가감속차로 등 설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교차로개선으로 시거 확보 및 마을안길 진출입 안전 도모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1항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지도96호 용천도로 교차로 개선공사 : 20,000천원(전액 도비) ○ 설계비 : 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000	-	-	20,000	2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20,000	-	-	20,000	2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김택중 (행) 2830	이재원 (행) 4681	이현주 (행) 2833

지방도606호 용마도로 갯길정비공사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방도606호 청양군 남양면 용마리 일원 갯길정비를 통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사업 위치 : 청양군 남양면 용마리 일원
- 사업 기간 : 2020. 05. ~ 2020. 12.(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총 사업비 : 50,000천원 *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미정
- 예산액 : **50,000천원**
- ※ 증감 사유 : 갯길정비를 통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사업량 : 갯길정비 L=1k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갯길정비를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제공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1항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도606호 용마도로 갯길정비공사 : 50,000천원(전액 도비) ○ 설계비 : 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	-	50,000	5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50,000	-	-	50,000	5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김택중 (행) 2830	이재원 (행) 4681	이현주 (행) 2833

국지도70호 음암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지도70호 서산시 음암면 문양리 일원 포장도 보수로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사업 위치 : 서산시 음암면 문양리 일원
- 사업 기간 : 2020. 05. ~ 2020. 12.(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500,000천원
- ※ 증감 사유 : 포장도 보수로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사 업 량 : 포장도 보수 L=4k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포장도 보수를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제공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1항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지도70호 음암도로 포장도 보수 : 500,000천원(전액 도비) ○ 설계비 : 50,000천원 ○ 공사비 : 4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00,000	-	-	500,000	50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500,000	-	-	500,000	50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김택중 (행) 2830	이재원 (행) 4681	이현주 (행) 2833

자살위험 교량 생명의 문구 설치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교량에 생명의 소중함, 희망 등의 내용 담은 문구 설치로 자살 예방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일원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원
- ※ 증감 사유 : 사업의 실효성이 없으며, 역효과 유발 우려(서울 마포대교 문구 전부 제거)
- 사 업 량 : 1개교(동백대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 내용 : 도내 교량에 생명의 소중함, 희망 등 내용 담은 문구 설치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1항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해당없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	-	19,000	-	-19,000	-	
국 비	-	-	-	-	-	-	
도 비	-	-	9,500	-	-9,500	-	
시군비	-	-	9,500	-	-9,5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김택중 (행) 2830	이재원 (행) 4681	이현주 (행) 2833

지방도617호 판교상좌 선형개량공사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사고 요인 제거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
- 사업 위치 : 서천군 판교면 상좌리 ~ 수성리 일원
- 사업 기간 : 2018.12. ~ 2021. 12.(다년도 사업)
- 총 사업비 : 6,000,000천원
- 예산액 : 1,000,000천원 (2020년 사업비 : 2,00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는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비 증액
- 사업량 : 선형개량 L=1.282km, B=10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 내용 : 선형개량 및 고개 낮추기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및 제92조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제92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판교상좌 선형개량공사 : 2,000,000천원(특교세 1,000,000, 시군비 1,000,000) ○ 공사비 : 2,0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6,000,000	2,000,000	-	2,000,000	2,000,000	2,000,000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2,000,000	1,000,000	-	-	-	1,000,000	
시군비	3,000,000	1,000,000	-	1,000,000	1,000,000	1,000,000	
기 타	1,000,000	-	-	1,000,000	1,000,000	-	특교세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00	1,00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김택중 (행) 2810	이재원 (행) 4673	이현주 (행) 2833

예꽃재마을 진입교차로 개선사업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 관리
	통 계 목	자치단체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원마을(예꽃재)과 연결되는 지방도616호의 마을진입부 종단 급경사 개선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도민 인명피해 방지
- 사업 위치 :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 657번지 일원
- 사업 기간 : 2019.06. ~ 2020.12.(단년도 사업)
- 총 사업비 : 750,000천원
- 예산액 : **100,000천원** (2020년 사업비 : 20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는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비 증액
- 사업량 : 지방도616호 교차로 개선 L=0.3k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진입교차로 개선사업 1식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및 제92조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제92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예꽃재마을 진입교차로 개선사업 : 200,000천원(도비 100,000, 시군비 100,000) ○ 공사비 : 2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50,000	550,000	-	200,000	200,000	-	
국 비	-	-	-	-	-	-	
도 비	350,000	250,000	-	100,000	100,000	-	
시군비	400,000	300,000	-	100,000	10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46.7%, 시비 53.3%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50,000	25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김택중 (행) 2830	이재원 (행) 4681	이현주 (행) 2833

지방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 관리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403-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로시설물 노후로 보수비용 및 사고발생 위험 증가와 예산집행 효율성 증대 필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관리 지방도 및 국지도
- 사업 기간 : 2019. 4. ~ 2021. 12.(다년도 사업)
- 총 사업비 : 2,900,000천원
- 예산액 : 1,600,000천원
- ※ 증감 사유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입찰) 시 가격협상으로 인한 감액
- 사업량 :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시스템 구축 및 DB, 도로(포장, 기하구조) 및 구조물 조사·분석·평가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1항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 1,600,000천원(전액 도비) ○ 시스템 구축 및 DB화, 도로시설물 조사·분석·평가 : 1,6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900,000	1,000,000	2,100,000	1,600,000	-500,000	300,000	
국 비	-	-	-	-	-	-	
도 비	2,900,000	1,000,000	2,100,000	1,600,000	-500,000	300,000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00	-	1,000,000	-	1,000,0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김택중 (행) 2830	이재원 (행) 4681	이중원 (행) 4682

서산~부석(지방도649호) 확포장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지방도 정비사업
	세부사업	서산~부석 (지방도649호) 확포장
	통 계 목	시설비 등 401-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하여 물류비용 절감, 지역주민 교통편의성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서산시 부석면 대두리 ~ 부석면 창리 지내
- 사업 기간 : 2010. 11. 16 ~ 2021. 05. 12
- 총 사업비 : 99,517,000천원
- 예산액 : 22,566,000천원
- ※ 증감 사유
 - 서산 → 도 동지역 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재원 변경(도비 △561,000천원 / 부담금 증 561,000천원)
 - 총사업비(10차) 조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978,000천원)
 - 코로나19 대응 관련 도비 재원부족으로 기 확보 예산 대체(도비→지역개발기금 8,767,000천원)
- 사업량 : L=8.4km, B=21.5m, 교량 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방도(649호) 확포장공사 (L=8.4km, B=21.5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1항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서산~부석 지방도 확·포장공사 : 22,566,000천원 (도비 588,000, 지역개발기금 21,417,000, 부담금 561,000) ○ 시설비 : 21,978,000천원(지역개발기금 21,417,000, 부담금 561,000) ○ 감리비 : 588,000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9,517,000	76,951,000	21,417,000	22,566,000	1,149,00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77,539,000	76,951,000	8,767,000	588,000	-8,179,000	-	
시군비	-	-	-	-	-	-	
부담금	561,000	-	-	561,000	561,000	-	
지역개발기금	21,417,000	-	12,650,000	21,417,000	8,767,000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741,123	15,291,399	422,724	97.3%	422,724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심사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09.4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김택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조용백 (행) 4673

대술~정안(지방도618호) 확포장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지방도 정비사업
	세부사업	대술~정안(지방도618호) 확포장공사
	통 계 목	시설비 등 401-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여 물류 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 위치 :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 이터리(지방도618호)
- 사업 기간 : 19.7.22. ~ 23.7.20.(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비 : 24,000,000천원
- 예산액 : 4,000,000천원
- ※ 증감 사유
 -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분 반영
 - 코로나19 대응 관련 도비 재원부족으로 기 확보 예산 대체(도비→지방채 4,000,000천원)
- 사업량 : 4차로 확장 L=4.8km, B=9.5~11.5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대술~정안(지방도618호) 확·포장공사 (L=4.8km, B=9.5~11.5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1항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대술~정안 지방도 확·포장공사 : 4,000,000천원(전액 지방채) ○ 공사비 : 4,0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4,000,000	7,013,000	4,000,000	4,000,000	0	12,987,000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20,000,000	7,013,000	4,000,000	-	-4,000,000	12,987,000	
시군비	-	-	-	-	-	-	
부담금	-	-	-	-	-	-	
지방채	4,000,000	-	-	4,000,000	4,000,000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502,072	1,935,453	566,689	77.4%	566,68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심사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3년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김택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조용백 (행) 4673

국방대진입도로(지방도697호) 확포장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지방도 정비사업
	세부사업	국방대 진입도로(지방도697호) 확포장
	통 계 목	시설비 등 401-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여 물류 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원(지방도697호)
- 사업 기간 : 15.12.15. ~ 20.08.31.(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 업 비 : 39,503,000천원
- 예 산 액 : 6,546,000천원
- ※ 증감 사유
 -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분 반영
 - 코로나19 대응 관련 도비 재원부족으로 기 확보 예산 대체(도비→지방채 6,000,000천원)
- 사 업 량 : 4차로 확장 L=4.2km, B=20m, 교량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방대 진입도로(지방도 697호) 확·포장공사 (L=4.2km, B=20.0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1항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 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방대진입도로 확·포장공사 : 6,546,000천원(도비 546,000, 지방채 6,000,000) ○ 공사비 : 6,147,000천원 ○ 감리비 : 399,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9,503,000	32,957,000	6,365,000	6,546,000	181,00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33,503,000	32,957,000	6,365,000	546,000	-5,819,000	-	
시군비	-	-	-	-	-	-	
부담금	-	-	-	-	-	-	
지방채	6,000,000	-	-	6,000,000	6,000,000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348,568	8,744,725	603,843	93.5%	603,843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융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심사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1년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김택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조용백 (행) 4673

어천~공주(4차)(지방도625호) 확포장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지방도 정비사업
	세부사업	어천~공주(4차) (지방도625호) 확포장
	통 계 목	시설비 등 401-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방도 625호선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평목리 구간 확포장공사를 통한 국제관광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수용체계 마련과 지역관광 개발 활용 및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제공
- 사업 위치 :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 평목리
- 사업 기간 : 2016 ~ 2022(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비 : 24,500,000천원
- 예산액 : 9,296,000천원
- ※ 증감 사유
 - 감정평가 완료 후 추가 편입 토지 보상비 계상
 - 코로나19 대응 관련 도비 재원부족으로 기 확보 예산 대체(도비→지방채 9,000,000천원)
- 사업량 : L=3.95km, B=10.0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방도625호 확·포장공사 (L=3.95km, B=10.0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1항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어천~공주(4차) 지방도625호 확포장 : 9,296,000천원(도비 296,000, 지방채 9,000,000) ○ 시설비 : 9,186,000천원 ○ 감리비 : 100,000천원 ○ 부대비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4,500,000	3,740,000	3,520,000	9,296,000	5,776,000	11,464,000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15,500,000	3,740,000	3,520,000	296,000	-3,224,000	11,464,000	
시군비	-	-	-	-	-	-	
부담금	-	-	-	-	-	-	
지방채	9,000,000	-	-	9,000,000	9,000,000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683,756	2,417,367	266,389	90.1%	266,38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심사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6년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이남재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조용백 (행) 4673

규암~청남(지방도625호) 확포장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지방도 정비 사업
	세부사업	규암~청남 (지방도649호) 확포장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하여 물류비용 절감, 지역주민 교통편의성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 사업 기간 : 2017 ~ 2022(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비 : 27,998,501천원
- 예산액 : 6,600,000천원
- ※ 증감 사유
 -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지구간 사업비 조정
 - 코로나19 대응 관련 도비 재원부족으로 기 확보 예산 대체(도비→지방채 6,000,000천원)
- 사업량 : 4차로 확장 L=2.29km, B=10.0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규암~청남(지방도625호) 확·포장공사 L=2.29km, B=10.0m
- 지원 근거 : 「도로법」 6조 제1항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 건설·관리계획(이하 "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규암~청남 지방도 확·포장공사 : 6,600,000천원(도비 600,000, 지방채 6,000,000) ○ 시설비 : 6,500,000천원 ○ 감리비 : 1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7,998,501	9,851,740	5,100,000	6,600,000	1,500,000	11,546,761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21,998,501	9,851,740	5,100,000	600,000	-4,500,000	11,546,761	
시군비	-	-	-	-	-	-	
부담금	-	-	-	-	-	-	
지방채	6,000,000	-	-	6,000,000	6,000,000	-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478,721	5,200,732	277,989	94.9%	277,98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심사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0년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김택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조용백 (행) 4673

기지사~한진(지방도619호) 확포장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지방도 정비 사업
	세부사업	기지사~한진 (지방도619호) 확·포장
	통 계 목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계획(석문국가산업단지, 송산 제2일반산업단지 등)과 택지개발계획(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교통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왕복 4차로 도로로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도로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당진시 송악읍 기지사리 ~ 한진리 일원(지619호)
- 사업 기간 : 2017. ~ 2024.(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비 : 143,171,000천원
- 예산액 : **245,000천원**
※ 증감 사유 : 연계용역 시행 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감액
- 사업량 : L=9.3km, B=17.5m(4차로 확장 및 신설)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방도619호 확·포장공사 (L=9.3km, B=17.5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이하 "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기지사~한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 245,000천원(전액 도비) ○ 시설비 : 235,000천원 ○ 부대비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43,171,000	3,500,000	310,000	245,000	-65,000	139,426,000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143,171,000	3,500,000	310,000	245,000	-65,000	139,426,000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47,817	830,305	417,512	66.5%	417,512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심사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8년 (2019~2023)	2016년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김택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조용백 (행) 4673

밀두~대음(지방도623호) 확포장사업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지방도 정비사업
	세부사업	밀두~대음 (지방도623호) 확포장
	통 계 목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하여 물류비용 절감, 지역주민 교통편의성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지원대책사업

○ 사업 위치 :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밀두리 일원

○ 사업 기간 : 2018 ~ 2025

○ 총 사업비 : 42,600,000천원

○ 예산액 : 310,000천원

※ 증감 사유 : 실시설계 완료('20.9월) 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금년도 내 보상 추진 어려움, 예산감액

○ 사업량 : L=3.58km, B=18.75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지사

○ 사업 내용 : 지방도(623호) 확포장공사 (L=3.58km, B=18.75m)

○ 지원근거 : 도로법 제6조 1항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이하 "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밀두~대음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 310,000천원(전액 도비) ○ 시설비 : 300,000천원 · 생태계보전협력금 = 100,000천원 · 측량비 = 200,000천원 ○ 부대비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2,600,000	805,000	510,000	310,000	-200,000	41,485,000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42,600,000	805,000	510,000	310,000	-200,000	41,485,000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55,000	426,278	228,722	65%	228,722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적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3.2.	2018.06.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김택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조용백 (행) 4673

오천우회도로(지방도610호) 확포장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지방도 확포장
	세부사업	오천우회 지방도 확포장
	통 계 목	시설비 등 401-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서해안 오천항, 갈매곶 순교성지 등 해안관광도로의 중에에 있으며, 보령화력, 영보 일반 산업단지 등의 연결도로로 향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오천면 영보리와 소성리를 연결하는 연결로 개설로 교통편의 제공
- 사업 위치 :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 소성리(지방도610호)
- 사업 기간 : 2016 ~ 2026년(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비 : 15,300,000천원
- 예산액 : 3,685,000천원
- ※ 증감 사유 :
 - ‘20년 하반기 수용재결 및 공탁 추진 예정으로 보상비 추가 필요
 - 코로나19 대응 관련 도비 재원부족으로 기 확보 예산 대체(도비→지역개발기금 3,685,000천원)
- 사업량 : L=3.98km, B=9.5m(2차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오천우회도로(지방도 610호) 개설공사 L=3.98km, B=9.5m(덧씌우기 1.93km, 신설 2.05k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1항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 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오천우회도로 개설공사 : 3,685,000천원(도비 10,000, 지역개발기금 3,675,000) ○ 공사비 : 500,000천원 ○ 보상비 : 3,175,000천원 ○ 부대비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5,300,000	2,710,000	1,920,000	3,685,000	1,765,000	8,905,000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11,625,000	2,710,000	1,920,000	10,000	-1,910,000	8,905,000	
시군비	-	-	-	-	-	-	
부담금	-	-	-	-	-	-	
지역개발기금	3,675,000	-	-	3,675,000	3,675,000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143,176	340,589	1,802,587	15.9%	1,802,587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심사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5년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김택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조용백 (행) 4673

삭선~원북(지방도603호) 확포장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지방도 확포장
	세부사업	삭선~원북(지603호) 확포장사업
	통 계 목	시설비 등 401-01~03

□ 사업개요

※ 증감 사유

- 사업량 : L=3.98km, B=9.5m(2차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내용 : 삭선~원북(지방도 603호선) 확·포장공사 L=3.98km, B=9.5m(2차로)
- 지원근거 : 「도로법」 제31조 1항

①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 관리청이 수행한다.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삭선~원복 지방도 확·포장공사 : 2,510,000천원(도비 110,000, 지역개발기금 2,400,000) ○ 공사비 : 500,000천원 ○ 보상비 : 2,000,000천원 ○ 부대비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6,514,000	2,050,000	2,010,000	2,510,000	500,000	41,954,000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44,114,000	2,050,000	2,010,000	110,000	-1,900,000	41,954,000	
시군비	-	-	-	-	-	-	
부담금	-	-	-	-	-	-	
지역개발기금	2,400,000	-	-	2,400,000	2,400,000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491,200	877,747	613,453	58.8%	613,453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심사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7.5.17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김택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조용백 (행) 4673

산동~상덕(지방도624호) 확포장사업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지방도 확포장
	세부사업	산동~상덕(지624호) 확포장사업
	통 계 목	시설비 등 (401-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하여 물류비용 절감, 지역주민 교통편의성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 천안시 직산읍 상덕리(지방도624호)
- 사업 기간 : 2018 ~ 2027(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비 : 128,659,000천원
- 예산액 : 2,510,00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대응 관련 도비 재원부족으로 기 확보 예산 대체(도비→지역개발기금 2,500,000천원)
- 사업량 : L=7.74km, B=19.5m(2차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산동~상덕(지방도 623호선) 확·포장공사 L=7.74km, B=19.5m(2차로)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1항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산동~상덕 지방도 확·포장공사 : 2,510,000천원(도비 10,000, 지역개발기금 2,500,000) ○ 설계비 : 2,500,000천원 ○ 부대비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28,659,000	620,000	2,510,000	2,510,000	-	125,529,000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126,159,000	620,000	2,510,000	10,000	-2,500,000	125,529,000	
시군비	-	-	-	-	-	-	
부담금	-	-	-	-	-	-	
지역개발기금	2,500,000	-	-	2,500,000	2,500,000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0	50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심사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9년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김택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조용백 (행) 4673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철도 및 물류지원
	세부사업	서해KTX 고속철도망 구축
	통 계 목	학술용역비 (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서해안 지역의 고속철도망 도입으로 우리나라 국가철도망의 합리적 구축에 기여 및 서해안 지역의 철도 수송여건을 획기적 개선으로 지역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 기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 2021.(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200,000천원
 - ※ 증감 사유 :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 연결선 건설사업의 연계에 따른 경제성 분석 등
- 사 업 량 :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역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 연결사업의 정성적, 정량적 분석,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 연결선 건설사업의 관한 기술적 검토, 노선대안 검토,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 연결선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평가에 따른 종합검토
- 지원 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제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③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 사전타당성조사 : 200,000천원(전액 도비) ○ 사전타당성 조상 용역 1식 = 2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	-	200,000	20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200,000	-	-	200,000	20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2020. 4월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철도항공물류팀	김택중 (행) 2830	박병용 (행) 4691	조병길 (행) 4692

철도역 설치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철도 및 물류지원
	세부사업	철도역 설치 열화상카메라 등 구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철도역 열화상카메라 구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 2021.(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42,00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도내 철도역 열화상카메라 구입(성립전 예산 편성)
- 사 업 량 : 철도역 10개소, 카메라 6대 구입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천안, 아산지역 주요 철도역사 내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
- 지원 근거 : 행정안전부-3361(2020. 3. 20.)호, 안전정책과-3498(2020. 3. 24.)호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행정안전부-3361(2020. 3. 20.)호, 안전정책과-3498(2020. 3. 24.)호

-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열화상카메라 운영 및 방역지원) 교부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열화상카메라 운영 및 방역지원 : 42,000천원(전액 도비) ○ 열화상카메라 구입비용 : 4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2,000	-	-	42,000	42,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42,000	-	-	42,000	42,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철도항공물류팀	김택중 (행) 2830	박병용 (행) 4691	박민규 (행) 2835

가야곡~양촌 국지도건설 집행잔액 및 이자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세부사업	국가지원지방도건설 (가야곡~양촌)
	통 계 목	반환금기타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야곡~양촌 국지도건설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사업 위치 : 논산시 양촌면 모촌리 ~ 거사리,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일원
- 사업 기간 : 2020. 5. ~ 10.
- 예 산 액 : 227,000천원
-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사 업 량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계상하여 반납 추진
- 지원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야곡~양촌) : 227,000천원(전액 도비) ○ 가야곡~양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221,996천원 · 국고 교부액 11,663,000천원 - 집행액 11,441,004천원 = 221,996천원 ○ 가야곡~양촌 국고보조금 이자 : 5,000천원 · (221,996천원 × 0.6% × 1,109/365) + (221,996천원 × 0.7% × 138/365) = 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27,000	-	-	227,000	227,000	-	
국 비	-	-	-	-	-	-	
도 비	227,000	-	-	227,000	227,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김택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정성식 (행) 2831

토지관리과



토지 관리과

1. 지적관리 234
2. 2019 시계열정사영상 제작 시군 부담금 반환 .. 236
3. 일본식 지명 등 조사 정비 238
4.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추가 설치 240
5.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배달 시험운영 .. 242
6.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44

지적관리	정책사업	토지행정선진화구현
	단위사업	고객중심의지적행정구현
	세부사업	지적관리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적관리를 통한 도민재산권 보호
- 사업 위치 : 3개시군(천안, 금산, 태안)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72,441천원**
 - ※ 증감 사유 : 2020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 선정에 따라 추가 교부
[국토해양부 공간정보제도과-908(2020.03.04.)]
- 사 업 량 : 1,206,140필지 / 2,775km²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3개시군(천안, 금산, 태안)
- 사업 내용 : 기본경비 및 지적공부 등 관리를 위한 인건비(사업비) 지원
- 지원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4조(토지의 조사·등록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적관리 : 72,441천원(전액 국비 및 인건비) ○ 천안시 2,125천원 * 8개월 * 1명 = 17,000천원 ○ 금산군 2,040천원 * 11개월 * 1명 = 22,441천원 ○ 태안군 2,062천원 * 8개월 * 2명 = 33,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2,441	-	58,441	72,441	14,000	-	
국 비	72,441	-	58,441	72,441	14,000	-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2,109	82,109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지적관리팀	서운석 (행) 2860	이성찬 (행) 4782	박용신 (행) 2862

2019 시계열정사영상 제작 시군 부담금 반환	정책사업	토지행정 선진화 구현
	단위사업	공간정보 기반구축
	세부사업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통 계 목	기타반환금 등 (802-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도비 및 3시군 부담금을 재원으로 2019년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사업을 수행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 시군별 부담비율에 따른 부담금 잔액 반환
- 사업 위치 : 3개 시군(공주, 보령, 예산) ○ 사업 기간 : 2020. 5. ~ 2020.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6,845천원**
- ※ 증감 사유 : 계약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시군 부담금(70%) 반환
- 사 업 량 : 3개 시군(공주, 보령, 예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사업정산에 따른 시군 부담금 반환

<2019년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사업 개요>

- 제작대상 : 3개 시군(3,561도엽) - 사업기간 : 2019. 5. 21. ~ 2020. 1. 15.
- 사업예산 : 396백만원(도비 119, 시군비 277) * 실제 소요예산 : 372백만원(도비 112, 시군비 260)
- 사업내용 : 우리도 토지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과거 항공사진을 연도별 정사영상 제작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19년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시군 부담금 반환 : 16,845천원(전액 도비) ○ 반환대상 : 3개 시군(공주, 보령, 예산) / 3,561도엽(공주 2,949, 보령 380, 예산 232) · 공주시 : (16,845,000원 / 3,561도엽) * 2,949도엽 = 13,950,000원 · 보령시 : (16,845,000원 / 3,561도엽) * 380도엽 = 1,798,000원 · 예산군 : (16,845,000원 / 3,561도엽) * 232도엽 = 1,097,000원 ※ (참고) 계약 집행잔액 : 총 24,064천원(도비 7,219(30%), 시군비 16,845(7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6,845	-	-	16,845	16,845	-	
국 비	-	-	-	-	-	-	
도 비	16,845	-	-	16,845	16,845	-	기타 반환금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서운석 (행) 2860	고재성 (행) 4784	한재현 (행) 4802

일본식 지명 등 조사 정비	정책사업	토지행정 선진화 구현
	단위사업	공간정보 기반구축
	세부사업	일본식 지명 등 조사 정비
	통 계 목	연구개발비 (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일제 강점기부터 일본식 표기 지명을 사용하거나 일본식 한자를 사용하여 지역의 전통과 역사성이 왜곡된 지명을 조사·정비하여 일제 잔재 청산 및 정확한 지명관리
- 사업 위치 : 15개 시군(2020년 3개 시군 / 아산, 금산, 서천)
- 사업 기간 : 2020. 4. ~ 2022. 12.(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비 : 1,000,000천원
- 예산액 : **198,500천원** (2020년 사업비 총액 : 200,000천원)
※ 증감 사유 : 연구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 사업량 : 30,212건(2020년 6,043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일제 강점기 시대에 바뀌거나 만들어진 지명, 일본식 지명, 왜곡지명 등 조사하여 정비
- 지원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19.6.25., 제312회 정례회 의결)

· (직무범위) 도내 일제 강점기 때 명명된 지명, 일제 잔재 행사 등 청산 방안 마련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일본식 지명 등 조사 정비 : 198,500천원(전액 도비) ○ 일본식 지명 등 조사용역 : 198,500천원 · 인건비(책임연구원(1명), 연구원(3명), 연구보조원(4명), 보조원(3명)) : 126,110,000원 · 경비(여비, 인쇄비, 조사표 작성 등 전산처리비, 회의비 등) : 54,344,550원 · 부가가치세(10%) : 18,045,450원 ※ (참고) 계약 낙찰차액 : 1,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98,500	-	200,000	198,500	-1,500	800 000	
국 비	-	-	-	-	-	-	
도 비	998,500	-	200,000	198,500	-1,500	800,000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원안가결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2019.8.28.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서운석 (행) 2860	고재성 (행) 4784	한재현 (행) 4802

국가지점번호판 제작추가 설치	정책사업	토지행정선진화구현
	단위사업	도로명주소기반구축
	세부사업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설치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산악·해안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 전국 통일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로 위치표시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사업 위치 : 1개 시·군(선정)
- 사업 기간 : 2020. 5. ~ 2020.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292천원**
※ 증감 사유 :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18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활성화 사업)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에 재투자(예산담당관실-5513(2019.04.25.)호)
- 사 업 량 : 6개소 이상(특수 제작품 우선)
- 사업시행방법 : 도, 1개 시·군(선정) 협업
- 사업시행주체 : 도, 1개 시·군(선정)
- 사업 내용 : 긴급구조 위치안내 시설인 국가지점번호 추가 설치(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
- 지 원 근 거 : 「도로명주소법」 제4조

「도로명주소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5(지점번호의 표기 등)
- ②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이 없는 지역에 철탑, 수문, 방파제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긴급구조 등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추가 설치 : 10,292천원(전액 도비) ○ 번호판 제작·설치 : 1,608,300원(태양광LED지주형 평균단가) x 6개 ≙ 9,650천원 ○ 지점번호 검증비용 : 107,000원(산지 기준) x 6개 = 64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292	-	-	10,292	10,292	-	
국 비	-	-	-	-	-		
도 비	10,292	-	-	10,292	10,292		특교세 재투자
시군비	-	-	-	-	-		
기 타	-	-	-	-	-		

* 보조율 : 도비 100%(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부동산주소정책팀	서운석 (행) 2860	김동현 (행) 4783	박삼해 (행) 4799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배달 시험운영	정책사업	토지행정선진화구현
	단위사업	도로명주소기반구축
	세부사업	주소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 (주소체계 고도화)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배송인프라가 미흡한 지역(농촌, 어촌, 산촌)에 도로명주소와 드론을 활용한 배송 방안 연구
- 사업 위치 : 충남 태안군,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일원
- 사업 기간 : 2020. 6. ~ 1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0,000천원**
 ※ 증감 사유 : 도서산간지역 배송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주소체계 고도화 및 혁신성장산업 지원 시범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
- 사 업 량 :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배달 시험운영 연구용역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연구용역)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사업 내용 :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배달 운항 매뉴얼 개선 및 확산비용 절감방안 등 연구
- 지원근거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도 지자체로 선정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1125(2020.3.19.)호
 - 「주소체계 고도화 및 혁신성장산업 지원 시범사업」 선도 지자체 선정 결과 알림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576(2020.4.3.)호
 - 2020년도 국가지방협력수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통지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배달 시험운영 연구용역비 : 150,000천원(특별교부세) ○ 인건비 114,023천원(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일괄) ○ 경 비 17,102천원(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운영경비 일괄) ○ 일반관리비 5,245천원(원가의 4%) ○ 부가가치세 13,630천원(원가의 10%)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공고, 2020.01.03.) 적용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50,000	-	-	150,000	150,000	-	신규
국 비	150,000	-	-	150,000	150,000		특교세
도 비	-	-	-	-	-		
시군비	-	-	-	-	-		
기 타	-	-	-	-	-		

* 보조율 : 국비 100%(특별교부세)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부동산주소정책팀	서운석 (행) 2860	김동현 (행) 4783	박상해 (행) 4799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정책사업	토지행정선진화 구현
	단위사업	디지털지적구축
	세부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도해지적의 디지털 지적 구축
- 사업 위치 : 도내 전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 ~ 202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448,489천원
※ 증감 사유 :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 당초 예산 배정액(가내시)과 확정 교부액 차액분 반영
- 사 업 량 : 43개 사업지구 / 23,279필지 / 21,433천m²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수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100년전 종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이용현황대로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국책사업임.
- 지원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시·도종합계획의수립)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지적소관청별 배분계획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①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4,448,489천원(전액 국비) ○ (당초) 예산배정액(가내시) 4,449,509천원 - (확정교부액) 4,448,489천원 = △1,02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448,489	-	4,449,509	4,448,489	-1,020	-	
국 비	4,448,489	-	4,449,509	4,448,489	-1,020	-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20,000	723,852	496,418	60%	496,418	2개년 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조건부추진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서운석 (행) 2860	신영수 (행) 4785	김춘호 (행) 4803

종합건설사업소



종 합 건 설 사 업 소

1.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 250
2.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민간인) 252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	정책사업	고품질건설공사수행
	단위사업	고품질건설공사수행
	세부사업	건설공사 수행지원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집행을 제고,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률 제고 등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를 통한 건설업 상생발전·건설경기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9,00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워크숍 개최 지연
- 사 업 량 :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 2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3조 제1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도의 책무)

-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 : 9,000천원(전액 도비) ○ 강의자료 인쇄비 : 20,000원(단가)×45권(수량)×2회(횟수) = 1,800천원 ○ 회의장 및 장비 임차료 등 : 2,000,000원(단가) x1일 x2회(횟수) = 4,000천원 ○ 강사비(일반1급) 490,000원(단가)×1명(인원)×2회(횟수) = 980천원 ○ 참가자 식비 : 8,000원(단가) x 12명(수량) x 3식 x 2회(횟수) = 640천원 ○ 전세버스 임차료 : 400,000원(단가)×1대(수량)×2회(횟수) = 800천원 ○ 현수막 등 기타 제잡비 : 390,000원 x 2회(횟수) = 78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000	-	18,000	9,000	-9,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9,000	-	18,000	9,000	-9,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9,000	16,785	2,215	88.3%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도로건설과	시설2팀	김진수 (행) 7530	장원욱 (행) 7538	박재순 (행) 7539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민간인)	정책사업	고품질건설공사수행
	단위사업	고품질건설공사수행
	세부사업	건설공사 수행지원
	통 계 목	행사실비지원금 (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집행을 제고,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률 제고 등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를 통한 건설업 상생발전·건설경기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1,800천원**
※ 증감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워크숍 개최 지연
- 사 업 량 :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 2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3조 제1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도의 책무)

-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행사 실비 보상금 : 1,800천원(전액 도비) ○ 참가자 식비 : 8,000원(단가) x 38명(수량) x 3식 x 2회(횟수) ≍ 1,8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800	-	3,600	1,800	-1,8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1,800	-	3,600	1,800	-1,8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900	3,532	368	90.6%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도로건설과	시설2팀	김진수 (행) 7530	장원욱 (행) 7538	박재순 (행) 7539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공 주 지 소

1. 지방도 유지보수 등 258
2. 이동단속장비(축중기) 구입 262

지방도 유지보수 등	정책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단위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세부사업	도로유지보수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지도 및 지방도 상 도로시설물의 적절한 유지보수공사 시행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도민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 사업 위치 :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사업 기간 : 2020. 01. ~ 2020. 12.
- 예 산 액 : 5,600,000천원
※ 증감 사유 : 도로환경 정비에 따른 지역주민의 도로 환경 편익 증진
- 사 업 량 : 국지도 및 지방도 유지관리 L=916.5km
- 사업시행방법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시소
- 사업시행주체 : 파손된 도로시설물(포장도, 배수시설 등) 유지보수공사 등의 수행
- 지원근거 :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도 유지보수 등 : 5,600,000천원(전액부담금) ○ 도로시설물(포장도, 배수시설, 안전시설, 보행로 등) 정비 : 5,600,000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1) 천안시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700,000 천원 · 지방도693호 장산도로 갓길정비공사 : 배수시설 1식 = 100,000,000원 · 지방도691호 용원도로 갓길정비공사 : 배수시설 1식 = 96,000,000원 · 지방도624호 상덕도로 배수로정비공사 : $L=1,000m \times 7m \times 18,000원/m^2 = 126,000,000원$ · 국지70호 도하도로 배수로정비공사 : $L=1,000m \times 7m \times 18,000원/m^2 = 126,000,000원$ · 국지도23호 오목도로 포장보수공사 : $L=1,000m \times 7m \times 18,000원/m^2 = 126,000,000원$ · 국지도23호 상덕도로 포장보수공사 : $L=1,000m \times 7m \times 18,000원/m^2 = 126,000,000원$ 2) 공주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700,000 천원 · 안양리 외1개소 배수시설 정비공사 : 배수시설 100,000원 $\times 650m = 65,000,000원$ · 지방도 691호 방호울타리 정비사업 : 방호울타리 1식 = 66,000,000원 · 지604호 덕학도로 배수시설정비공사 : 배수시설 100,000원 $\times 650m = 65,000,000원$ · 지629호 부곡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L= 2,000m \times 7m \times 18,000원/m^2 = 252,000,000원$ · 지691호 하대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L= 2,000m \times 7m \times 18,000원/m^2 = 252,000,000원$ 3) 논산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700,000 천원 · 지방도697호 신기도로 배수로정비 : $330m \times 200,000원 /m = 66,000,000원$ · 지방도697호 대촌도로 배수로정비 : $325m \times 200,000원 /m = 65,000,000원$ · 지방도697호 청동도로 배수로정비 : $325m \times 200,000원 /m = 65,000,000원$ · 지방도68호 동산도로 포장보수공사 : $L=2,000m \times 7m \times 18,000원/m^2 = 252,000,000원$ · 지방도691호 산성도로 인도설치공사 : $L=2,000m \times 7m \times 18,000원/m^2 = 252,000,000원$ 4) 금산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700,000 천원 · 지방도601호 예미도로 배수로정비 : $400m \times 200,000원 /m = 80,000,000원$ · 지방도635호 역평도로 배수로정비 : $400m \times 200,000원 /m = 80,000,000원$ · 지방도601호 서대도로 배수로정비 : $400m \times 200,000원 /m = 80,000,000원$ · 국지도55호 구석도로 배수로정비 : $410m \times 200,000원 /m = 82,000,000원$ · 지방도 포장도 포장보수공사 : $L=3,000m \times 7m \times 18,000원/m^2 = 378,000,000원$ 5) 부여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700,000 천원 · 지613호 교원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L=3,000m \times 7m \times 18,000원/m^2 = 378,000,000원$ · 지606호 장항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 $450m \times 200,000원 /m = 90,000,000원$ · 지611호 장암도로 차선도색공사 : 차선도색 1식 = 152,000,000원 · 지611호 상황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 $400m \times 200,000원 /m = 80,000,000원$ 6) 서천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1,600,000 천원 · 지방도611호 문덕도로 외2개소 도로정비공사 : $L=150m \times 200,000원 /m = 30,000,000원$ · 지방도613호 지현도로 포장보수공사 : $L=1,000m \times 15m \times 18,000원/m^2 = 270,000,000원$ · 삼가교 재가설 공사 : $L=31m$ 재가설 1식 = 1,300,000,000원 7) 청양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500,000 천원 · 지방도606호 금정도로 차선도색공사 : $L=20.0km \times 4,000,000원/km = 80,000,000원$ · 지645호 동강도로 배수시설 정비공사 : 안전시설1식 = 90,000,000원 · 국지96호 중목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L=2,000m \times 7m \times 30,000원/m^2 = 420,000,000원$ · 지619호 신정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 안전시설1식 = 110,0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600,000	-	5,200,000	5,600,000	400,000	-	
국 비	-	-	-	-	-	-	
도 비	-	-	5,200,000	-	-5,200,000	-	
시군비	-	-	-	-	-	-	
부담금	5,600,000	-	-	5,600,000	5,600,000	-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590,100	7,903,451	1,686,649	82	1,629,52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융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19년 (2020~2024)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지소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보수1팀	전상근 (행) 7600	강현수 (행) 7613	강석모 (행) 7614



이동단속장비(축중기) 구입	정책사업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세부사업	과적단속 업무수행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단속장비(축중기) 구입
- 사업 위치 : 충남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관할도로(8개 시군 36개 노선)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 50,000천원
- ※ 증감 사유 : 구입예정 장비의 단종 및 신제품 이동단속장비(축중기)의 구입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분 반영
- 사 업 량 : 이동식축중기 1세트(4채널용)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 사업 내용 : 과적차량 단속 2개조 운영에 따른 중량계측용 이동식축중기 1세트(4채널용) 구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이동단속장비(축중기) 구입 : 50,000천원(전액 도비) ○ 16,500천원(축중판) × 2대 = 33,000천원 ○ 15,000천원(인디게이터) × 1대 = 15,000천원 ○ 300천원(고무패드) × 4개 = 1,200천원 ○ 800천원(연결케이블) × 1조 = 800천원 ※ <u>증액사유</u> : 당초 구입예정 장비인 축중판 및 인디게이터의 단종으로 인한 신제품 국내 수입총판 견적이 상승분(<u>16,800천원</u>) 반영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	43,200	50,000	6,800	-	
국 비	-	-	-	-	-	-	
도 비	50,000	-	43,200	50,000	6,8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지소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단속팀	전상근 (행) 7600	서원경 (행) 7626	박정윤 (행) 7627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홍성지소

1. 지방도 유지보수 등	268
---------------------	-----

지방도 유지보수 등	정책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단위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세부사업	도로 유지보수
	통 계 목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홍성지소 관할 지방도 765km에 대하여 도로배수시설, 안전시설, 시설물(교량)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하여 사고예방 및 교통편의 증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7개 시·군(보령, 아산,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200,000천원
- 사 업 량 : 국지도 및 지방도 유지..관리 L=765k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사업 내용 : 파손된 도로시설물(포장도, 배수시설 등) 유지보수공사 등의 수행
- 지원근거 : 도로법 31조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총액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시설비(401-01) : 5,200,000천원(전액 지역개발기금) ○ 도로시설물(포장도, 배수시설, 안전시설, 보행로 등) 정비 : 5,200,000천원 1) 보령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650,000천원 · 지방도617호 용수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2,000m × 100천원/m = 200,000천원 · 지방도617호 평라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2,000m × 100천원/m = 200,000천원 · 지방도606호 수부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1,000m × 100천원/m = 100,000천원 · 지방도610호 성연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1,000m × 100천원/m = 100,000천원 · 지방도611호 신산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500m × 100천원/m = 50,000천원 2) 아산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650,000천원 · 지방도624호 음봉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2,000m × 100천원/m = 200,000천원 · 국지도70호 쌍룡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2,000m × 100천원/m = 200,000천원 · 지방도616호 송악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2,000m × 100천원/m = 200,000천원 · 지방도624호 탕정도로 배수로정비 : 1개소 × 50,000천원/개소 = 50,000천원	

	3) 당진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650,000천원 · 지방도647호 천의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2,000\text{m} \times 100\text{천원/m} = 200,000\text{천원}$ · 지방도615호 장항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1,500\text{m} \times 100\text{천원/m} = 150,000\text{천원}$ · 국지도70호 송산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2,000\text{m} \times 100\text{천원/m} = 200,000\text{천원}$ · 지방도647호 적서도로 배수로정비 : $1\text{개소} \times 100,000\text{천원/개소} = 100,000\text{천원}$ 4) 서산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650,000천원 · 국지도70호 갈산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1,500\text{m} \times 100\text{천원/m} = 150,000\text{천원}$ · 국지도96호 창리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1,000\text{m} \times 100\text{천원/m} = 100,000\text{천원}$ · 운산면 배수로정비 : $3\text{개소} \times 100,000\text{천원/개소} = 200,000\text{천원}$ · 국지도70호 가각정비공사 : $1\text{개소} \times 100,000\text{천원/개소} = 100,000\text{천원}$ · 지방도649호 명천교차로 개선사업 : $1\text{개소} \times 100,000\text{천원/개소} = 100,000\text{천원}$ 5) 홍성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650,000천원 · 상정교 보도확장 및 보수공사 : $1\text{개소} \times 350,000\text{천원/m} = 350,000\text{천원}$ · 국지도96호 포장도 보수공사 : $1,000\text{m} \times 100\text{천원/m} = 100,000\text{천원}$ · 지방도609호 봉신도로 방음벽설치 : $1\text{개소} \times 200,000\text{천원/개소} = 200,000\text{천원}$ 6) 예산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650,000천원 · 지방도619호 노화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2,000\text{m} \times 100\text{천원/m} = 200,000\text{천원}$ · 국지도70호 가지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2,000\text{m} \times 100\text{천원/m} = 200,000\text{천원}$ · 지방도616호 배수로정비 : $2\text{개소} \times 25,000\text{천원/개소} = 50,000\text{천원}$ · 지방도619호 상중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2,000\text{m} \times 100\text{천원/m} = 200,000\text{천원}$ 7) 태안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650,000천원 · 국지도96호 근흥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2,000\text{m} \times 100\text{천원/m} = 200,000\text{천원}$ · 지방도634호 황촌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2,000\text{m} \times 100\text{천원/m} = 200,000\text{천원}$ · 지방도603호 관리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2,000\text{m} \times 100\text{천원/m} = 200,000\text{천원}$ · 태안도로 배수로정비 : $1\text{개소} \times 50,000\text{천원/개소} = 50,000\text{천원}$ 8) 지방도 유지보수 예비비 : 150,000천원 · 도로 긴급복구 : $1\text{식} \times 150,000\text{천원} = 150,000\text{천원}$ 9) 지방도 풀깎기 : 500,000천원 · 도로 풀깎기 : $1,000\text{km} \times 500\text{천원/km} = 500,000\text{천원}$	
--	--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200,000	-	5,200,000	5,200,000	-	-	
국 비	-	-	-	-	-	-	
도 비	-	-	5,200,000	-	-5,200,000	-	
시군비	-	-	-	-	-	-	
부담금	5,200,000	-	-	5,200,000	5,200,000	-	지역개발자금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	12,883,968	7,727,933	310,275	60.0	4,845,76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보수1팀	김성수 (행) 7650	왕창성 (행) 7661	문진호 (행) 7662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	274
----------------------	-----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	정책사업	주택 건설 및 운영
	단위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부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
	통 계 목	일반예비비(8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사업 기간 : 2020.01.0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2,403,710천원**
 - ※ 증감 사유 : '19년 예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액분(7,403,710천원)만큼 예비비 증액 계상
- 사 업 량 : 예비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사업 내용 : 특별회계 운영상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 제5항

충청남도 학교용지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 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부담금
 2. 개발이익환수예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에 수입금
-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 ④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 : 12,403,710천원(전액 도비) ○ 일반예비비 : 12,403,710천원 · 12,403,710천원 × 1식 = 12,403,710천원 · 기정액(5,000,000천원)+순세계잉여금 증액분(7,403,710천원) = 12,403,710천원 ▶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액분(7,403,710천원)만큼 예비비 증액 계상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2,403,710	-	5,000,000	12,403,710	7,403,710	-	
국 비	-	-	-	-	-	-	
도 비	12,403,710	-	5,000,000	12,403,710	7,403,71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644,943	-	15,644,943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주택정책팀	윤영산 (행) 2820	노윤철 (행) 4641	이동훈 (행) 4652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 복수~대전간(2차) 지방도 확·포장 공사 ... 280
2. 계룡신도안~대전세동 광역도로 정비사업 · 282

복수~대전간(2차) 지방도 확·포장공사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
	세부사업	광역도로 정비사업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고속 및 일반국도와 연결되는 간선도로 건설로 종합적인 교통망체계 구성, 교통수요의 원활한 흐름확보 및 물류비 절감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 일원(지방도 635호)
- 사업 기간 : 2010.12.30.~2020.12.31.(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비 : 66,751,000천원
- 예산액 : 5,486,280천원
- ※ 증감 사유 :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조정결과 및 결산상 세출 처리상황(잉여금) 반영
- 사업량 : 4차로 신설 L=1.04km, B=19.5m (교량 1개소/451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광역도로(지방도 635호선) 4차로 확장
- 지원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9.6.16., 2000.4.12., 2004.1.20., 2005.6.30., 2011.1.17., 2012.8.22.>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 공사비·보상비 (국비 50%, 지방비 50%) / 8차 총사업비 조정 후 국비 35%, 지방비 65%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복수~대전간(2차) 지방도 확포장공사 : 5,486,280천원(국비 4,234,300, 도비 1,251,980) ○ 공사비 : 5,431,280천원 ○ 감리비 : 45,000천원 ○ 부대비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66,751,000	61,264,720	4,199,280	5,486,280	1,287,000	-	계속
국 비	30,868,300	26,634,000	3,829,000	4,234,300	405,300	-	
도 비	35,882,700	34,630,720	370,280	1,251,980	881,7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35%, 도비 6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6,329,558	13,093,710	3,235,848	80.18%	3,235,848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김택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정성식 (행) 2831

계룡신도안~대전세동 광역도로 정비사업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
	세부사업	계룡신도안~대전세동 광역도로 정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수요의 원활한 흐름확보 및 물류비 절감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동 일원
- 사업 기간 : 2017년 ~ 2020년(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비 : 14,920,000천원(충청남도 시행분)
- 예산액 : **2,737,500천원** (2020년 사업비 : 2,750,000천원)
 - ※ 예산액은 예산서상 표시되는 금액이며, 2020년 사업비는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증감 사유 :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삭감
- 사업량 : 4차로 신설 L=1.04km, B=19.5m (교량 1개소/451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광역도로(지방도 635호선) 4차로 확장
- 지원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9.6.16., 2000.4.12., 2004.1.20., 2005.6.30., 2011.1.17., 2012.8.22.>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 공사비·보상비 (국비 50%, 지방비 5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 광역도로 건설사업 : 2,750,000천원 (국비 1,825,000, 도비 912,500, 시군비 12,500) ○ 공사비 : 2,7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4,920,000	10,980,000	2,751,000	2,750,000	-1,000	1,190,000	계속
국 비	7,460,000	5,040,000	1,826,000	1,825,000	-1,000	595,000	
도 비	3,730,000	2,520,000	912,500	912,500	-	297,500	
시군비	3,730,000	3,420,000	12,500	12,500	-	297,500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35%, 도비 6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475,693	7,200,688	-	80.18%	3,275,005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김택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정성식 (행) 2831

